

몽골 투자 가이드

1

몽골의 기본정보

1.1 지리 및 기후



몽골은 북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체 면적은 1,565,600km²이고 동, 서, 남쪽 경계의 4673km가 중국과 접해있으며 북쪽 경계의 3485km가 러시아와 접경해있다. 몽골의 인구는 대략 270만 명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낮다. 수도인 울란바토르가 가장 큰 도시로 약 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주요도시로는 북쪽 경계의 공업중심지 다르칸(Darkhan)과 구리 광업이 주산업인 에르데네트(Erdenet)가 있다.총 인구의 약 40%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유목민이다. 나머지 인구의 대부분은 주요 도시로 부터 작은 마을까지 널리 퍼져있다.

몽골의 위도(북위 42도~52도)는 중앙 유럽이나 미국 북쪽에 위치한 주들과 비슷하다. 몽골은 대륙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있으며 상대적으로 대륙의 많은 부분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후의 온도변화가 심하며 강수량이 적다.(울란바토르의 강수량은 연평균 220mm, 약 10inch). 강수량은 초여름에 집중되어 있으며 겨울은 대체로 건조하고 매우 춥다.

몽골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작물농업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목축업에는 적합하다. 몽골 유목민족은 양, 염소, 말, 들소, 낙타를 주로 키운다. 이들 목축업은 몽골 경제의 주요 산업이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을 이룬다.

몽골의 약 65%가 초원지이며 남부의 3분의 1은 고비(Gobi) 사막이고 총 국토의 12%가 (주로 북부 지역) 숲과 산으로 덮여있다. 몽골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데 금, 형석, 몰리브덴과 같은 철금속과 납, 구리, 니켈, 알루미늄, 주석, 창연과 같은 비철금속이 풍부하다.

1.2 인종과 언어

몽골 인구의 90%는 할흐(Khalkh)족이며 10%는 주로 몽골 서쪽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Kazakhs)족 또는 다른 인종이다. 주 언어는 알타이어 계통인 몽골어이다. 몽골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 구소련의 영향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젊은 세대는 현재 영어와 함께 일본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프랑스어 등을 공부하고 있다. 주 종교는 티베트 불교이며 1980년대 말 공산주의가 끝날 때를 기점으로 크게 부흥하였다. 한편 몽골 서쪽 지역으로부터 전파된 이슬람교 및 기타 종교도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다. 몽골의 행정구역은 21개의 아이막(aimag)과 334의 솜(soums)으로 나누어지며 수도 울란바토르에 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1.3 역사

근대 몽골의 역사는 1206년도 칭기즈칸이 몽골부족을 통합하고 아시아를 건너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군사 정복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칭기즈칸의 후예와 자손들은 13세기 후반 영토를 확장하였는데 이때 당시 몽골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당시의 영토는 현재 베트남 북쪽으로부터 중동 그리고 중앙 유럽에 달한다. 그러나 14세기 중반 내전이 일어나면서 몽골왕국은 무너지고 17세기 중국 청나라에 의해 복속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 뒤, 북방 몽골의 공주는 우루가(Urga)의 ‘살아있는 부처’로 불리는 통치자 ‘제브준 담바 호타크’(Jebtsun Damba Khutukhtu)와 함께 자주몽골을 선포하였다. 이어 1921년 7월 몽골은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924년 통치자 제바준(Jebtsun)이 죽기 전 까지 군주제를 이어나갔다.

1924년, 몽골은 소련의 도움으로 중앙 계획 경제 및 중앙 계획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 인민 공화국을 설립했다. 1989년 초, 구소련에서의 부패 정보공개 정책 및 몽골에서의 소련군 철수로 울란바토르에서는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위는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주의 몰락 및 민주주의 체제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 최초의 다당제 선거는 1990년에 열렸다.

1.4 정치 체제

몽골 입법부가 1992년 1월에 채택한 새로운 헌법은 같은 해 2월 12일부터 발효되었고 몽골을 민주 공화국으로 명시했다. 단일국가인 몽골은 아이막이라 하는 지방 자치제로 행정 단위가 구분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몽골의 정치 구조는 3권 분립과 국가의 원수(元首)제로 이루어진다.

입법부

몽골 정부의 입법권은 7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국가최고회의(국회)로부터 나온다. 시민들은 임기 4년의 국가최고회의 임원을 투표하고 선출할 권리가 있다. 국가최고회의 임원은 최소 25세 이상의 몽골 시민이어야 한다. 의회는 국내와 해외 정책을 포함하여 각 지역에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 국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날짜를 정하며 대통령을 취임시키고 해명시킬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를 임명, 대체, 해명시킬 수 있다. 국가 법률은 공포된 이후 10일 후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

국회를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정당이 대통령 후보자를 선정한다. 선거는 과반수 투표제로 실시되며 한번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일회 재선될 수 있다. 후보자는 반드시 45세 이상의 몽골 시민이어야 하며 선거 전, 최소 5년 이상 몽골에 거주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국가 안보회의(대통령, 국무총리, 국회대표로 이루어짐)의 장(長)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도 국회의 3분의2이상이 대통령의 거부 결정에 반대투표를 하면 결정은 무산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있는 법령을 최종 선포하며 주요정당의 자문을 받아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거나 선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회의 3분의2 이상 동의 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행정부

행정부는 국가 최고의 집행 기관이다.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부 임기는 4년이다.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이끌고 국회 법안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행정부는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수행기관이나 감독기관 같은 기관을 설립하고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2008년 총선거 이후 현 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무총리가 첫 번째 부총리를 포함한 11명의 장관들과 13개의 감독기관 및 30개의 수행 기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였다. 몽골 정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open-government.mn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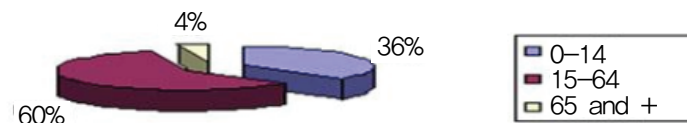
몽골 헌법은 사법기능을 법원에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사법부는 최고 상위 기관인 대법원과 다수의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은 범죄사건이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하급 법원의 항소소송 결정을 검토한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검찰총장에 의해 양도된 인권사례를 검토하며 헌법을 제외한 법률의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헌법은 형사, 민사, 행정 법원같이 대법원이 감독하지 않는 특수화된 법원의 구성을 허용한다. 법원의 자문위원회 역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법원 자문위원회는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1.5 사회

인구

2008년 말 몽골의 인구는 268만 3천명에 도달하였다. 몽골 인구의 60%는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 거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다. 전체인구의 60%가 15~64세이고 36%가 0~14세이며 4% 이상이 64세이다.

[그림1] 연령별 분포도



인종

몽골에는 29개의 민족이 있다. 모두 몽골 유목민 부족이나 몽골로부터 흡수당한 터기 계통 부족의 자손들이다. 할흐(Khalkh)족은 전체의 86%를 차지하며 다른 주요 민족으로는 서쪽에 거주하는 카자흐(Kazakhs)족(6%)과 북쪽에 거주하는 부랴트(Buriates)족(2%)이 있다. 몽골 내 민족 간의 인종차별은 상대적으로 적다. 언어나 부족 간의 차이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 몽골은 매우 평화로운 나라이다.

종교

전체 몽골인의 94%가 티베트 불교이며 나머지 6%가 이슬람교이다.

언어

몽골의 공식적인 언어는 할흐(Khalkh) 몽골어인데 키릴(Cyrillic) 알파벳을 사용하며 전체인구의 90%가 사용한다. 다양한 방언들도 전 지역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서쪽에서는 카자흐(Kazakhs)어와 투반(Tuvan)어도 사용된다. 몽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는 러시아어이며 그 다음이 영어인데 영어가 점차적으로 제2외국어인 러시아어를 대체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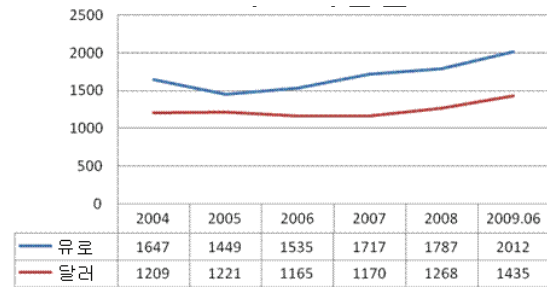
교육 제도

몽골의 교육제도는 기초교육, 대학교육, 대학원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이 있다. 기초교육은 11년이 고 대학교육은 대략 4~6년이며 대학원 교육과 직업훈련은 과목에 따라 이수 기간이 다르다.

국내 통화(通貨)

몽골의 국내 통화는 투그릭(Tg)이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는 20000, 10000, 5000, 1000, 500, 100, 50, 20, 10이다. 환율은 대략 1달러(\$에 1435투그릭(Tg)이다.(2009년 몽골 은행 기준)

〈표1〉 투그릭 환율



2

경제 전망과 주요 경제부문

2.1. 국내총생산

몽골의 2008년 국내총생산은 6조 1301억 투그릭(Tg)이었으며, 작년과 대비해 33.3%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가축생산의 증가인데 작년에 비해 3백만(7.5%) 마리가 증가하여 총 4천4백30만 마리에 도달하였다. 또한 농업은 21%, 제조업은 4.7%, 서비스업은 15.9% 각각 성장했다.

〈표 2〉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연간 증감률 변화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GDP	8.6	10.2	8.9
농업, 사냥 및 임업, 어업	7.5	15.8	50
제조업	13.4	29.0	4.7
전기, 가스, 급수	4.5	7.5	6.6
건설	5.1	8.5	-8.7
도매와 소매 무역;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 개인 및 가전제품	15.3	6.7	19.5
운송, 저장 및 커뮤니케이션	12.1	26.6	19.5
금융 중개	-3.2	30.2	14.9
부동산, 임대 및 기타 사업 활동	5.4	-1.7	5.4
공공 행정 및 국방; 의무사회보장	0.5	4.5	5.6
교육	4.4	2.1	6.6
보건 및 사회업무	9.3	10.7	8.3
다른 지역 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	6.0	7.7	16.9
간접적으로 측정된 금융 중개 서비스	37.3	31.7	3.4
생산세순액(Net Taxes on production)	23.0	6.8	14.6

참고: ※잠정추산

〈표 3〉 국내총생산(GDP) 산업별 구성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국내총생산(GDP)	100.0	100.0	100.1	100.0
농업, 사냥 및 임업, 어업	21.9	19.5	20.5	18.8
광업 및 채석업	22.1	30.0	29.5	28.2
제조업	5.8	5.5	6.1	6.1
전기, 가스, 급수	3.2	2.8	2.5	2.2
건설	2.5	2.1	2.2	2.0
도매와 소매 무역;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 개인 및 가전제품	14.9	14.1	13.6	14.6
호텔 및 식당	0.8	0.8	0.7	0.7
운송, 저장 및 커뮤니케이션	12.3	9.9	10.0	10.4
금융 중개	3.6	2.9	3.3	3.1
부동산, 임대 및 기타 사업 활동	7.9	6.8	5.9	5.1
공공 행정 및 국방; 의무사회보장	2.4	3.2	3.1	4.3

구분	2005	2006	2007	2008
교육	3.1	3.3	3.7	4.9
보건 및 사회업무	1.4	1.5	1.6	1.8
다른 지역 사회,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	1.1	1.0	1.0	1.1
금융중개서비스(FSIM)	-2.9	-3.3	-3.7	-3.4

참고: ※잠정추산

〈표 4〉 몽골 경제 지표 2003~2008

경제지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인당 국내총생산(GDP) (\$)	583	717	900	1,214	1,491	1,972.8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연간%변화)	5.4	13.3	7.6	8.6	10.2	8.9
실업률 (%)	3.5	3.6	3.3	3.2	2.8	2.8
수출 증가율 (연간 % 변화)	16.2	39.0	22.5	44.6	26.4	30.3
수입 증가율 (연간 % 변화)	9.6	8.9	21.8	23.6	42.3	66.6
외부 부채 (국내총생산GDP) (%)	1,240	1,312	1,360	1,414	1,529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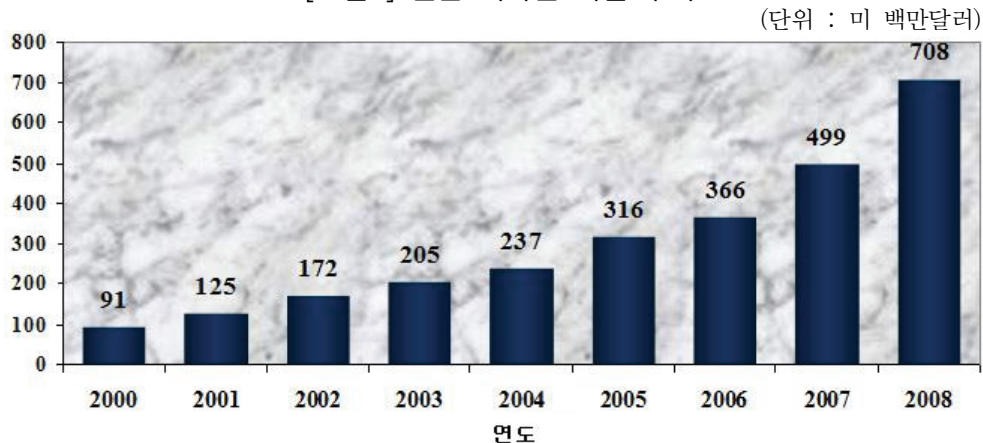
출처 : ADB, 2008, 아시아 개발 전망 2008, 몽골 분기별 2월 2009.

2.2. 외국인 직접 투자 / 해외직접투자

2008년 말 기준으로 1990년부터 99개국 9327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석유 부문 포함)이 몽골에 총 30억 16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 그리고 이는 2004년~2008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6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08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7억 9백만 달러로, 1551개 회사가 투자했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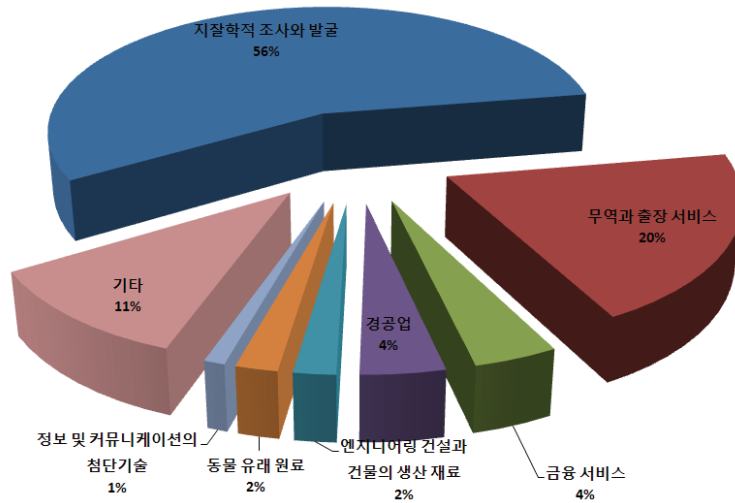
분야별로 보면 광업과 지질조사가 전체 투자의 56.3%에 달했다. 무역과 출장 서비스는 20.5%, 은행과 금융업은 3.8%, 경공업은 3.6%, 전자재는 2.1%, 축산물 가공업은 1.8%를 각각 기록하였다.

[그림2] 연간 외국인 직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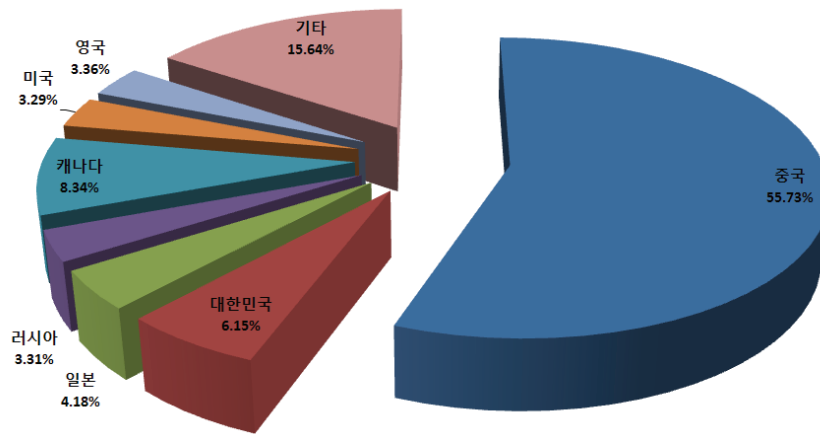


출처: 투자교역청 자료

[그림 3] 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 (2008년 말 기준)



[그림 4]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2008년 말 기준)



2.3 무역

몽골은 114개국과 교역하고 있으며 2008년도 대외 무역의 총액은 2007년과 비교하여 20억 3,580만 달러(49.4%)가 증가했으며 총 60억1,551만 달러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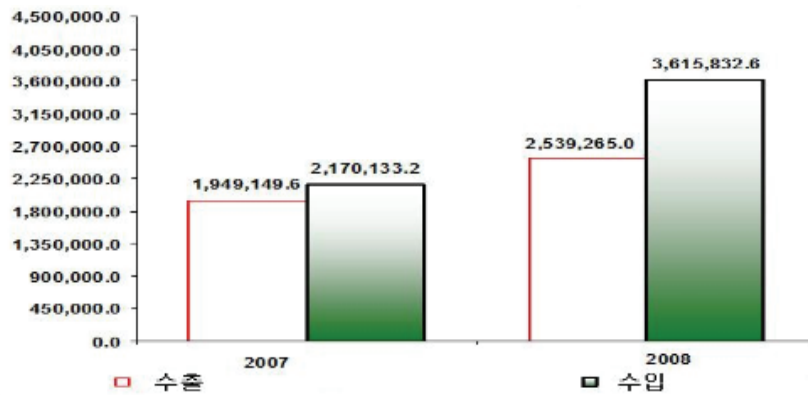
수입은 수출보다 10억7600만 달러 초과해 적자가 발생했다. 계절항 무역총액은 443.2백만 달러로 전체 무역총액의 7.2%를 차지한다. (이는 수출의 11.1%와 수입의 4.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008년 수출금액은 2007년과 비교해 5억9010만 달러 증가한 25억3930만 달러였다. 몽골은 상품 및 원료, 원자재를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64.2%), 미국(4.4%), 캐나다(6.9%) 등 72개국에 수출했다. 주요 수출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5.5%를 차지했다.

2008년도에 총 수입액은 약 36억1580만 달러로 2007년과 비교해 14억 3570만 달러(66.6%) 증가하였다. 몽골은 국가 총수입의 94.3%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44.3%)와 아시아국가(50.0%)를 포함한 108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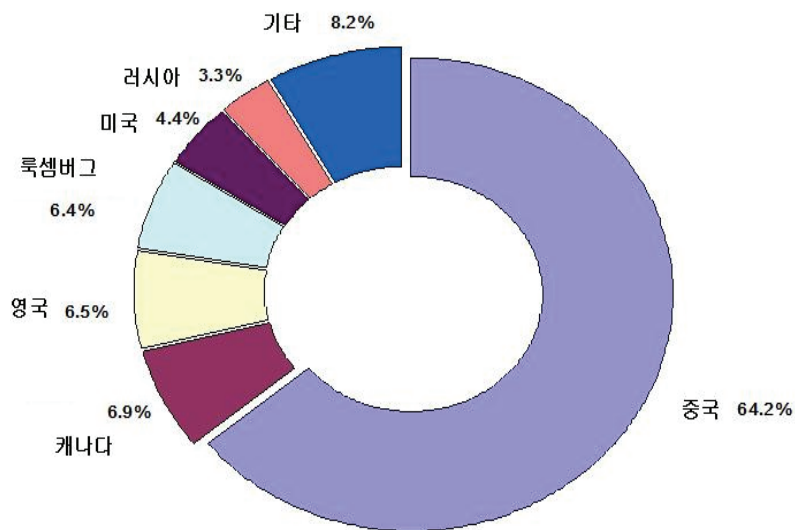
[그림 5] 대외 무역 총액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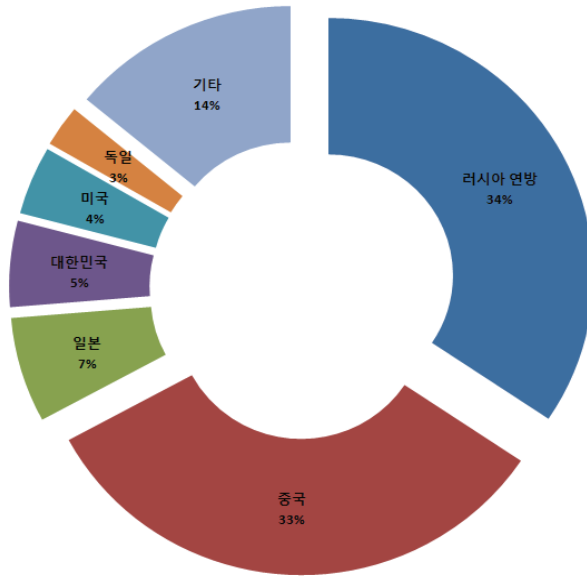
참조: 대외 무역통계 2009.12.(몽골 해관총서)

[그림 6] 수출 대상국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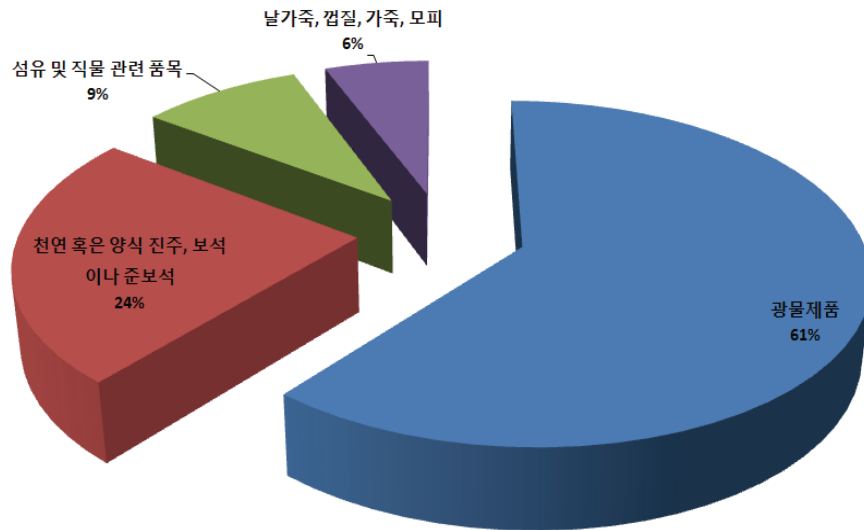
참조: 대외 무역통계 2008.12.(몽골 해관총서)

[그림 7] 수입 대상국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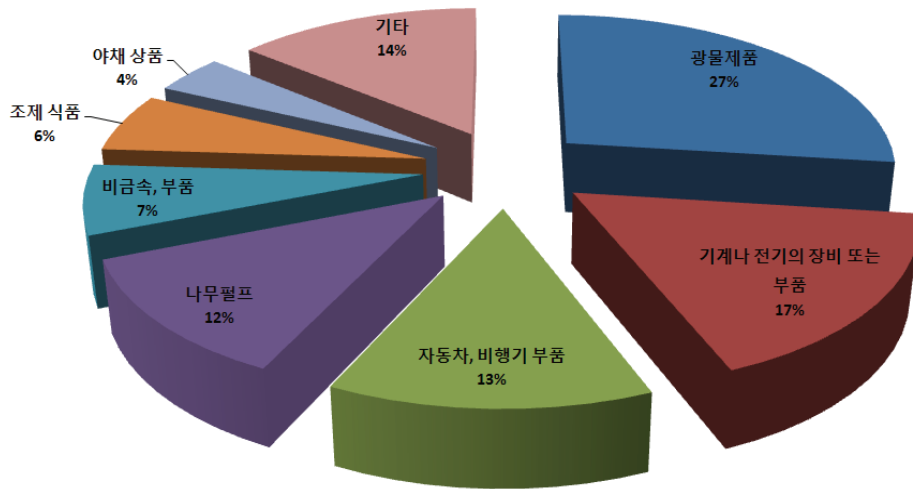
참조: 대외 무역통계 2008.12.(몽골해관총서)

[그림 8] HS코드별 수출상품 구조



참조: 대외 무역통계 2008.12.(몽골해관총서)

[그림 9] HS코드별 수입 상품 구조



참조: 대외 무역통계 2008.12.(몽골해관총서)

다른 나라에 비해 몽골은 대외 무역 자유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1997년 1월, 몽골이 세계무역 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국제 무역 원칙을 따르는 경제개혁과 새로운 무역체제로의 발전을 보여 주었다. 이는 세계가 몽골을 세계무역 체제의 일원으로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몽골은 세계무역 기구(WTO) 가입국가에 대한 정보 및 무역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이익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4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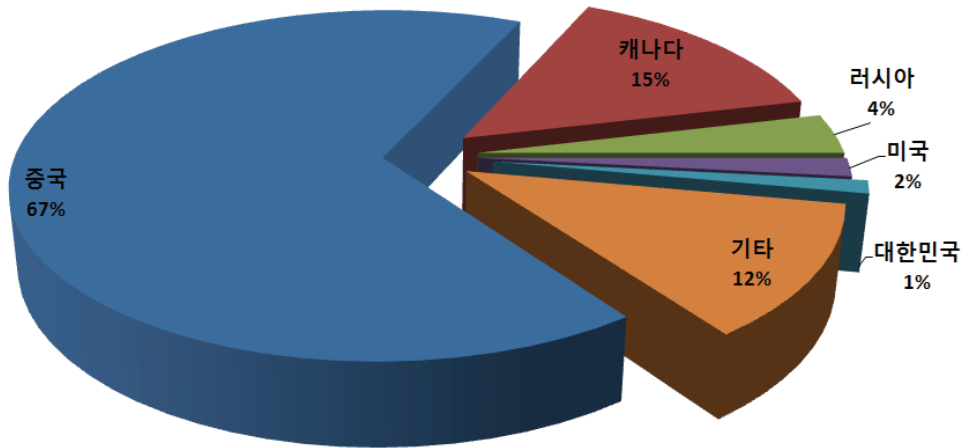
광업은 몽골의 주요산업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7.8%, 국내 산업생산지수의 64.6%, 수출의 68.5%, 외국인직접투자의 56.3%를 차지한다.

몽골의 광대한 영토에는 금, 구리, 석탄, 형석, 은, 우라늄 등 광물이 풍부하다. 몽골 영토의 24.8%는 일반탐사 작업이 진행 중이며 1:50,000의 비율로 지질 지도를 작성한다. 주로 해외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탐사비용은 최근 6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금속 경제단체(Metals Economics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의 2004년, 2006년 탐사비용은 세계 탐사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의 광물 탐사는 세계최고 탐사지역 열 곳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몽골은 금, 구리, 석탄, 형석, 아연, 철광석, 텅스텐 등을 생산하고 이 중 대부분을 수출한다. 구리정광, 몰리브덴, 석탄, 아연을 중국에 수출하고 형석은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며 금은 캐나다, 미국, 영국, 중국으로 수출한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질과 광산산업에 유리한 법적 환경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질, 광산, 석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총 외국인 투자자의 68.8%가 중국이며 또한 캐나다(14.5%), 러시아(3.7%), 미국(1.7%) 등이 있다.

[그림 10] 몽골 광업에 대한 국가별 외국인 투자 비중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몽골 국회는 광물에 대한 법률을 재승인했다. 공장과 소규모 광산에 대한 법안은 상반기에 국회에서 논의 될 것이다. 이 법은 광업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량을 적절히 규제하고 화학물질의 사용과정 조사와 명확한 사용방법, 등록법, 중화법을 체계화할 것이다.

우리는 광물자원 풍부국인 몽골이 앞으로 원자재 부문에서도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몽골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및 중국과 함께 선진국을 위한 미세, 중간 추출물 산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지식과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표 5> 채광작업 적용 세율

	2003	Since 2004	2006
법인 소득세	15-40%	15-30%	10-25%
수입 광산 장비의 부가가치세	0%	0%	0%
로열티 (석탄, 일반광물)	2.5%	2.5%	2.5%
로열티(다른 광물)	7.5%	7.5%	5%
초과이윤세(금, 구리 광석, 농축)	0%	0%	8%
금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0%	0%	0%

2.5 식품 및 농업 가공 산업

식품분야

2008년 39조8000억 투그릭이 몽골 내 식품분야에 투자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고용이 10.6% 늘어났다. 2008년 말, 식품 총생산이 당년도 초에 비해 19.1% 증가했으며 2005년 불변가격기준으로 163조4000억 투그릭에 도달했다. 육류와 육류제품에서 식품 공급 수준이 17.8%로 증가했으며 우유와

유제품은 28.2% 증가하였고 밀가루와 밀가루 제품은 각각 22.5%씩 증가했다.

몽골은 7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매년 식량 목적으로 소비하고 20만 톤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몽골의 국내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이다. 소비되고 있는 육류는 소고기(30%), 양고기(40%), 염소고기(15%), 말고기가(15%)이다. 2007년 전체 식량에 사용된 가축은 전체 가축의 17.4%에 해당하고 개인당 평균 100~200kg 고기를 소비한다.

농축산업에서 생산되는 고기의 5-10%만이 도축업체에서 가공되고 이의 대부분이 수출된다. 29개의 가축 도살산업이 국가 수준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한해에 8만5천 톤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산업에는 2만5천 톤의 고기를 한 번에 저장 할 수 있는 냉각 저장소가 사용되는데 각 주요 도시인 다르칸(Darkhan)과 오르혼(Orkhon)의 인구에 대한 고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고기의 연 수출 평균은 10,000톤으로 97%가 러시아로 수출된다.

2008년 말, 몽골에는 4300만 마리의 가축이 있다고 집계되었다. 이들 중 41.7%는 약 4억652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 할 수 있다. 농업에서 전체 우유 생산의 2%(800만 리터)에 해당하는 양의 우유가 매년 유제품 공장에서 가공된다.

2007년 우유 및 유제품을 통틀어 개인당 평균 130.8~146.7리터의 우유가 소비되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우유 섭취량은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4배 적었다.

몽골은 전국적으로 매일 70톤 이상(일 년에 2천5백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200개의 유제품 공장을 운영 중이다.

몽골 정부는 국가 우유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200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 낙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공 산업과 농부들의 협력을 지원하고 아이막(aimag)에 소규모 우유 가공 시설을 설립하고 있다. 총 1조8천억 투그릭을 투자해 500-5000리터의 우유를 냉장 보관하기 위한 4개의 중앙 건물을 짓고 매일 400-1000리터의 우유를 가공하기 위하여 22개의 복합시설을 지었다.

2008년에 밀 비축량은 2007년에 비해 1.8배(20만 톤) 증가하였다. 또한 토마토는 26.4%(14만 3천 톤), 야채는 9.6%(8만1600톤) 비축량을 늘렸다. 이는 국내 감자수요를 100% 충족시키는 양이며 밀가루의 수요의 50%, 야채수요의 49%를 충족시키는 양이다.

정부는 또한 가금류 축산을 지지하기 위하여 대출 이자 및 관련 정책을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에는 71만개 이상의 계란이 수요에 맞게 공급되었다.

축산분야

축산업은 몽골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써 2008년 기준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20%(2조 2665억 투그릭)를 농업이 차지하였으며 이 중 축산분야가 89.3%를 차지했다. 축산분야에서 17만 1500개의 가축일가와 36만6200명의 목축인 들을 포함하여 몽골의 농업 분야에서 전체 노동자의 39.9%가 일하고 있다. 목축업 자들의 연령은 16-43세가 48.5% 이고 35-60 가 38.7% 이며 나머지는 60세 이상이다.

2008년, 가축 조사의 분석 및 예측에 따르면, 4330만 마리의 가축(낙타 30만 마리(0.6%), 말 220만 마리(5%), 소 250만 마리(5.8%), 양 1840만 마리(42.4%), 염소 2000만 마리(46.1%))이 길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가축 수는 2007년에 비교했을 때 7.5%, 3백만 마리(낙타 5800마리(2.2%), 소 7760

마리(3.2%), 양 136만2300마리(8.1%), 염소 162만1500마리(8.8%)) 증가했다. 반면 말은 5만2600마리(2.3%) 줄어들었다.

몽골은 매년 평균 2.2만 톤의 양털, 5600톤의 캐시미어, 1200톤의 낙타털실, 1.7만 톤의 고기, 750만 톤의 가죽과 피혁, 3억3500만 톤 리터의 우유를 생산한다. 이 중 양털의 41.4%, 캐시미어의 77.6%, 고기의 12.9%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으로 수출된다.

축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몽골정부는 축산 부문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몽골정부는 그 동안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부터 순혈종의 가축을 수입해 왔는데 이는 가축 품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05년 전까지만 해도 순혈종의 동물을 기르는 전문 가축업자들은 100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920명으로 늘어났으며 409곳의 낙농장에 젖소 12612 마리, 48곳의 소농장에 황소 5,285 마리, 154곳의 돼지농장에 돼지 1,582 마리, 그리고 207곳의 양계장에 닭 30만 마리가 각각 늘어났다. 또한 매년 우유 2200 - 2500kg, 고기 180 - 214kg, 계란 250 - 290개가 소비되었다.

몽골정부는 몽골 농장에서 생산되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축산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로의 충분한 공급과 수출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작물 분야

2008년 말 기준 몽골의 경작지는 총 192,500헥타르이며 154,000헥타르엔 곡물이, 12,300헥타르엔 감자가, 6400헥타르엔 채소, 5400헥타르엔 사료작물이 재배됐다.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작지 면적은 10,200헥타르(5%) 줄어들었지만 곡물, 감자, 야채, 사료 작물의 재배면적은 각각 32,200헥타르(26.4%), 800헥타르(7.2%), 300헥타르(4.5%), 600 헥타르(12.4%) 증가하였다.

2008년도엔 곡물 212,900톤, 감자 134,800톤, 채소 78,900톤이 수확됐고 건초 1,009,800톤, 사료 27600톤이 생산됐다. 2007년도 대비 곡물, 감자, 야채, 그리고 건초의 수확량은 각각 98,100톤(85.5%), 20,300톤(17.7%), 2500톤(3.2%), 76,700톤(8.2%), 증가한 반면 사료는 7700톤(21.9%) 감소했다.

2008년 몽골 정부가 추진한 “깨끗한 땅을 되찾으려는 제3의 캠페인”에 의해 작물 수확량이 증가했다. 2008년 국가는 212,900 톤의 곡물을 확보했고 54.9%의 채소가 국내생산 되었으며 이는 정부 목표치에 도달한 양이다. 하지만 감자는 국내생산에 의해 수요의 79.2%만 공급되었고 정부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농작물은 전체 농업 상품의 20%이상을 차지하며 60,000여명이 종사하는 몽골의 주요 산업 분야이다.

몽골은 구소련의 경제력과 기술적 도움에 힘입어 1959년 “깨끗한 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1976년 같은 캠페인을 또 한차례 성공시켰다. 그 결과, 경작 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는 120만 헥타르에 달했으며 종자, 감자, 야채 및 가축 사료 상품이 국내 수요에 맞게 충분히 생산 됐다.

몽골의 농작물 분야는 오늘날 100% 민영화 되어있으며 총 1,100개가 넘는 관련 민간기관이 있다. 그리고 현재 단체와 개인이 606,900 헥타르 면적의 땅(795명이 300 헥타르, 140명이 300 - 600 헥타르, 102명이 600 - 1500 헥타르, 47명이 1500 - 3000 헥타르, 그리고 19명이 3000 헥타르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29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농작기구의 70% 이상이 1990년 전에 사용되어진 지게차(960여개), 콤팩트(526여개) 및 기타 농업 트레일러이다.

아이막(aimaks)별 재배지 경작률은 다음과 같다. 셀렌게 아이막(Selenge aimak)에 종자 59.6%, 감자 및 채소 22.2%, 티브 아이막(Tuv aimak)에 종자 12.7%, 감자 및 채소 19.1%, 불간 아이막(Bulgan aimak)에 종자 14.9%, 감자 및 채소 6.4%, 쿠부르걸과 달칸 울 아이막(Khuvsgul and Darkhan – Uul aimaks)에 종자 8.3%, 감자 및 채소 6%가 경작된다. 상기 5개 아이막(aimaks)에서 전체 종자의 95.4%가 재배되며 전체 감자와 채소의 52.8%가 생산된다.

지난 몇 년 동안 몽골은 관개작물에 대한 품종개량과 관개 시스템의 건설 복구 및 발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11.7조(투그릭)을 투자하였다. 이 결과, 현재 관개토지의 크기는 35,000 헥타르에 도달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 온실효과의 영향,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전문 농경인 부족과 같은 이유로 국가 전체 경작 토지의 30%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 필수 채소의 47%, 감자의 86%가 국내 생산으로 부터 공급되었다.

몽골 정부는 농작물 발전을 위해 “제3의 황야 캠페인”이라는 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2008년에 종자, 감자, 채소, 가축사료의 생산량이 각각 205,800톤, 142,100톤, 80,600톤 증가했다. 그 중 감자의 100%, 야채의 49%가 국내생산으로 몽골에 공급되었다.

전년도 축적된 농작물 양과 비교하여 종자가 91,200 톤, 감자가 28,500 톤, 야채가 1,500톤 증가하였다. 감자의 100%, 야채의 49%가 국내생산으로 몽골에 공급되었다.

〈표6〉 농작물 재배 현황

No	Capacity	완료			목표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	전체 재배 면적(1000/헥타르)	306.3	301.0	444.0	569.9	616.0	643.0
2	총 재배 면적	186.3	154.3	187.6	285.9	316.0	343.0
3	밀가루	115	116.1	150.4	256.4	280.0	300.0
4	감자	10.5	11.6	12.3	12.5	13.5	14.5
5	야채	5.8	6.1	6.5	7.0	7.5	8.5
6	가축사료	3.3	5.6	6.2	10.0	15.0	20.0
7	유지(油脂) 식물	51.7	14.9	12.2	0.0	0.0	0.0
8	단위 생산량 (중앙)						
9	밀가루	11.7	10.2	1.33	1.29	1.25	1.51
10	감자	103	97.7	11.55	12.00	13.48	14.14
11	야채	119	128.2	14.00	16.00	18.00	20.00
12	가축사료	29.3	17.0	2.00	2.50	2.50	2.60
13	유지(油脂) 식물	1.6	8.0	4.50	0.00	0.00	0.00
14	누적 생산량 (천/ 톤)						
15	밀가루	132.9	109	200.5	330.0	349.0	454.0
16	감자	109	113.6	142.1	150.0	182.0	205.0
17	야채	70.4	79.1	80.6	102.0	135.0	170.0
18	동물사료	10.0	12.0	15.7	25.0	37.5	52.0
19	유지(油脂) 식물	8.5	12.0	5.4	0.0	0.0	0.0
20	필수작물 (천/톤)						

No	Capacity		원료			목표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1	밀가루	400.0			50.13	82.50	87.25	113.50
22	감자	1320			107.6	113.6	137.8	155.30
23	야채	168.0			47.98	60.71	80.36	101.19

경공업

몽골의 2004-2007년 국내총생산(GDP) 중 가공 산업이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이는 농업, 사냥, 임업, 건설 분야보다 5배 낮고, 광산업, 추출산업(抽出産業)보다 6배 많으며 운송업, 커뮤니케이션 분야보다 2배 낮으며 부동산 분야, 차량 임대, 기타 사업 분야 보다 각각 2배 낮은 수치다.

가공 산업에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제품 수는 아직 많지 않다.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수출상품의 85%는 첫 번째 단계로 가공된 원자재이며 10%만이 고급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부가가치상품이다.

몽골의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기초한 국민 통합 개발 정책”은 지질 및 광업과 중공업, 가공 산업, 중소기업의 서비스, 농업 및 식품 산업, 여행 및 관광업 등 5개 주요 발전정책에 따라 규정됐다. 이 정책은 2007-2015년과 2016-2021년의 두 단계에 걸쳐 실행되도록 계획됐다.

몽골은 매년 양털 21,000톤, 염소 캐시미어 6000톤, 낙타모직 1000톤, 황소피혁 40만 톤, 말 피혁 30만 톤, 양가죽 330만 톤, 염소가죽 300만 톤을 생산한다.

하지만 국가산업이 캐시미어의 40%와 양털의 36%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최종완성품 개수는 적다. 가죽과 피혁 분야에서 10%의 말 피혁, 80%의 황소피혁, 90%의 양가죽, 16%의 염소가죽은 반 가공 상태로 수출된다.

오늘날 몽골에는 양털 가공 사업장 40여 곳, 캐시미어 가공 사업장 50여 곳, 소규모 자수 작업장 100여 곳, 가죽 및 피혁 가공 사업장이 30여 곳 있으며 목재 가공 부문 사업장 300여 곳, 중소기업도 날염 사업장 200여곳이 있다.

가죽 원료 가공 산업 개발 정책은 완성 단계를 확대 하는 것과 니트, 가죽, 신발, 기타 의류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단지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 발전 정책의 틀 안에서 몽골 국회는 실업률을 줄이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는 수출 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과 대외 무역의 균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과 몽골의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업 기술 단지의 설립과 발전에 대한 주요 방향”을 승인하고 수행하였다.

이 프레임 워크 산업 단지 조성의 계획에 따라 조건 및 가능성을 연구하는 필수적인 연구는 지방 연구소에서 대부분 진행 되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경제적·기술적 기초 구상, 환경적 조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달칸(Darkhan), 에르데네트(Erdenet), 울리 아스타이(Uliastai) 도시와, 바가노르(Baganuur), 바가한가이(Bagahangai), 날라이크(Nalaikh), 칸울(Khan-Uul)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단지 조성 개발 계획이 각각 수립되었다.

더욱이 각 아이막(aimag)과 소움(soum)에서 만들어진 연구결과에 따라 “2009-2012년 지방 산업 발전의 방향”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2.6 기반사업 분야

에너지 부문

몽골은 러시아 연방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대한 영토에 소규모의 인구 흩어져있는 국가다. 경제 성장, 빈곤 해소 및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도로, 에너지, 전자통신 등의 경제기반사업은 몽골에서 필수적이다. 몽골은 내륙에 고립되어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변국과의 거래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간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는 민간 참여부문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며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분야 회사의 상업화와 에너지 부문의 효율 증대를 가속화 시킨다.

광업 분야 발전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의 전력송전은 대부분의 모든 영토에 미치며 전체 21개의 아이막(aimag)과 334개의 소움(soum)중 305개의 소움(soum)에 전력이 공급된다.

몽골의 전력 부문 구성

중앙 에너지 시스템 - 5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 (802MW)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11개의 지방도시 (전체인구의 40%)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킨다.

서부 에너지 시스템 - 러시아 에너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두루 건(Durgun)에 수력 발전소 (12MW)가 있다.

동부 에너지 시스템 -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다.

몽골정부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나온 실행 계획에 따라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바가노르(Baga Nuur) - 언더한(Undurhaan) - 초이발산(Choibalsan)과 울란바토르(Ulaanbaatar) - 만달고비(Mandalgovi) -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 오유 톨고이(Oyu Tolgoi)를 220KW로 연결하는 항공 전력 전송선을 구축하고 바가노르(Baga Nuur)와 만달고비(Mandalgovi) 사이에 220KW 두 개의 전원 회로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몽골은 4000만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독특한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축 생활방식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전기공급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정부는 수력,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 의회는 2005년 “국립 에너지 재생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는 단계적, 지속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것을 촉진시키기며 2010년 전체 전력 생산의 3~5% 기준에서 2020년 20~25%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1] 2008년 전력 공급원



여기에는 태양력과 풍력의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시키고 수력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이 진행 중이다.

- 유목민 가족을 위한 휴대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일본, 종합개발기구)
 - 대략 200호의 가구에 200W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측정 장비를 설치했다.
- 신재생 에너지 (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에 의한 농촌지역 전원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
 - 이 프로젝트는 167개 소음의 오프-그리드 센터를 담당한다.
- 몽골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에 대한 몽골과 독일의 협력(독일, 대외 기술 협력단)
- 단계 1-2002년 완료. 수력 부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단계 2-2008년 완료.
 -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6KW 태양풍 혼합 시스템
 - 공사가 실행된 375KW 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 공사 중인 150KW 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 공사 중인 111KW 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 단계 3-2008 ~ 2011 추진 중
 - 사막 지역(한국, 산업자원부) 전화(電化)에 대한 태양광/풍력 기술 응용프로그램
- 국가 행사 “10만 태양 계르”
 - 1999년도 시작
 - 2000 ~ 2002 내 5000 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 주택설립 (몽골 정부지원)
 - 2003년 태양광 발전 주택 11,170개 설립 (부분 일본 무상 원조)
 - 2004년 태양광 발전 주택 20,620개 설립 (부분 중국 무상 원조)
 - 2008년 태양광 발전 주택 40,400개 설립 (몽골 정부지원)
 - /2005-2008/ 개발 중 완료
 - 2009 ~ 2011 내 20,000개의 태양광 발전 주택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 (부분 세계은행 무상원조)

또한 몽골 정부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아래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을 세웠다.

- 풍력 핵심 농장 50MW - 현장 사전 조사 시작
- 몽골 고비 사막 지역에 커다란 크기의 태양광 생성 시스템 - 사전 타당성 조사 완료. 일부 연구와 현장 시험이 시행되었다.
- 오르콘 수력 발전소(100MW) -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 에진골 수력 발전소(200MW) -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완료
- 에르 데네 부렌 수력 발전소(60MW) -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완료
- 차 가이트 수력 발전소(24.6MW) -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완료
- 온온 수력 발전소(60.0MW) -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 허스트 아랄 수력 발전소(18MW) -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액화석유가스(LPG)의 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화석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새로운 연료 혼합으로 액화석유가스(LPG)의 사용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몽골 정부는 법령 184번에 의거 액화 석유 가스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또한 가정 및 운송업의 LPG 사용 촉진을 목표로 삼고 필수적이고 안전한 규격과 규정을 소개한다.

2005년부터 러시아 연방,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약 만 명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를 충족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2200 톤을 수입 하였다.

건설 부문

1990년대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건설 분야는 지난 80년 동안 성공적으로 발전했다. 2007년 건설, 운송, 관광 분야의 급성장과 함께 건설 분야가 9% 가까이 성장한 것이 가장 좋은 예일 것이다.

오늘날 1000개의 건축설비 회사, 190개의 건축디자인 회사, 250명의 건축자재 생산자들은 전체적으로 3만 명이 넘는 공학 기술직원과 숙련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된다. 이중에 90개의 건설회사, 5개의 디자인 건축회사, 그리고 50개 이상의 건축자재 회사가 외국계다.

2008년 12월말, 4403억 투그릭 어치의 시공 작업이 수행되었다. 그중 4160억 투그릭(94.5%)의 시공 작업은 국내 건설 기관으로부터 수행되었고 242억(5.5%) 투그릭은 해외 건설 기관으로부터 수행되었다.

2007년 12월말과 비교하면 건설비 및 자본수리비는 509억 투그릭(13.1%) 줄어들었다. 국내 기관의 작업은 516억 투그릭(14.2%) 줄어들었다.

총 건설 및 수리비용은 29.9%의 주거 건물, 17.4%의 비 주거 건물, 38.8%의 일반 공학 건물, 13.9%의 자본수리 및 설비비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 기관으로부터 시행된 총 건축과 수리비용 중 오르 혼(Orkhon) 지방과 울란바토르(Ulaanbatar)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7% 와 54.4%였다.

건축 설비 개발을 통해 건축 재료 산업과 건축자재 수입 분야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한 동시에 건축 자재 상품의 종류도 증가하였다. 오늘날 몽골에는 470개의 건축 자재 공장이 있으며 그중 100개

는 최근 3년에 세워졌다.

정부는 건축 분야에서 대외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의 건설 방법론, 재료, 기술, 과학을 국가의 기술 발전과 함께 연구한다.

몽골 정부는 2005-2008년 사이 “4만 주택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중 37,000개를 완성하였다. “4만 주택 프로젝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몽골 정부는 2009년 2월 시행될 예정인 4년 계획의 “10만 주택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10만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1. 범위 : 직업훈련을 통해 건설부문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어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주택대출과 저당 및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국민 소득을 증가시킨다.
2. 투자 금액 : 이 프로젝트는 총 27억 달러의 투자금액이 요구된다.
3. 고용 창출 : “10만 주택” 프로젝트는 건설 분야에 5만개, 건축자재 생산 부문에 2만개, 지원인력 부문에 1만 5천개, 기간사업에 1만개의 일자리 등 총 9만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5,000명의 인구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4. 이익 : 건설 자재 산업은 시멘트, 모든 종류의 필러재료, 단열재, 유리, 강철, 마무리 재료 등의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운송: 도로, 비행, 철도, 항구

운송 분야는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진 독특한 몽골의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몽골은 “밀레니엄 도로”를 통해 남부 아시아와 유럽의 도로망을 잇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몽골의 운송 분야는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로운반, 철도운반, 항공운반, 수송운반 이 그것이다.

도로 분야

몽골 국내 도로망 건설의 주목적은 울란바토르(Ulaanbaatar)시와 아이막(aimag) 중심지를 연결시키는 것과 아이막(aimag) 중심지와 그 주변의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몽골은 11,200km(포장도로 1,500km, 비포장 도로 1,440km, 개선도로 1,346km, 지반 6,900km)가 넘는 국가도로 체제를 갖췄다. 주 도로망에 364(평균 37m) 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중 178 개가 목축 구조물이고 전체 길이의 20%를 차지한다.

두 번째 목표는 중앙 아이막(aimag)과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며 이것은 38,000km(포장도로 400km, 비포장도로 500km)에 달하는 지방 도로망 개설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세 번째 목표는 주변국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현재 울란바토르(Ulaanbaatar)로부터 러시아국 경까지, 현재 단 한 개의 포장도로만이 연결되어 있고 중국 국경과 가장 근접해있는 자민 우드(Zamyn Uud) 도로 역시 거의 완성 되었다. 서쪽몽골, 러시아, 중국을 잇는 세 번째 포장 국경도로는 현재 개발 고려 단계에 있다.

몽골의 도로망은 1929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총 49,250km 의 새로운 도로

망이 기존의 도로망(포장도로 1,714.9km, 비포장도로1,946.3km, 개선도로1,923.36km) 위에 건축되었다. 몽골 도로건설부는 국가의 도로망을 발전시키고 도로 관련 정책을 만들며 도로 건설과 정비 회사에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협력을 제공한다. 또한 다리의 건축과 정비를 감독한다.

밀레니엄 도로

몽골 국회는 2001년 결의안 9번에 의해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정부가 프로젝트 이행에 연관된 활동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에서 도로 및 다리 건설 기간을 8~10년 정도로 계획했다. 국산 도로건설용 기계 및 장비는 "밀레니엄 도로" 건설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밀레니엄 도로 건설을 위해 수입된 건설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법, 관세법 및 광물 수수료 면제법이 비준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밀레니엄 도로"건설은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부터 시작되며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뻗어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도시 운송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는 464km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다. 이 도로망의 78%는 포장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비포장도로이다. 울란바토르의 50개의 다리 중 90%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자동차의 대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던 지난 20년 동안 포장 도로망의 길이는 변하지 않았다.

철도

몽골 철도망은 1,815km로 긴 궤간을 보이고 있다. 이 궤간의 1,110km가 중앙선이며 중국/몽골 환승선에서 러시아로 가는 길을 연결해준다. 전체 길이의 239km는 직접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몽골 동부에 위치한 개별적 철도망이다. 또한 477km는 중앙선의 지선(支線)이다.

대륙국가인 몽골에서 철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통해 주변의 큰 국가 2곳을 연결시키며 국제 철도망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해륙 수송 및 동양과 서양을 최단거리로 연결한다. 2004년 4월에 몽골, 중국, 러시아를 연결시키는 광섬유 지상파망이 설치되었다.

몽골 철도는 광업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도 주로 쓰이는 운송수단이다. 중국 국경에 접해있는 자민 우드(Zamyn Uud)에서 울란바토르(Ulaanbaatar)까지 철도의 사용량은 도로포장이 완공되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몽골 제품, 특히 캐시미어를 포함한 동물 제품이 중국 도로에 한해 운송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도로운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거리 당 적은 비용이 든다. 특히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부터 자민 우드(Zamyn Uud)까지 도로 운송이 철도와 비교해 볼 때 기간산업 발전과 유지비용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을 보인다.

몽골 철도는 철도 협력기구, 국제 철도 연합, 시베리아 횡단 국제 연합의 일원이다.

항공

낮은 인구밀도와 혹한으로 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운송수단은 크게 발전 되어있지 않다. 항공 수송은 몽골의 사회와 경제 활동에 유효한 역할을 한다. 특히 관광업에서 항공은 몽골의 일반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 되고 있다. 울란바토르(Ulaanbaatar)와 지역중심을 연결하는 적절한 항공수송의 기본설비가 없이는 관광업은 성장 할 수 없다. 98% 이상의 국제 항공수송 서비스는 울란바토르(Ulaanbaatar)의 칭기즈칸 국제공항을 이용한다. 몽골 국내에 17개의 공항이 있는데 공항의 활주로에는 무기압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가 적합하다.

국제공항은 강풍, 모래바람, 눈보라, 그리고 시야를 방해하는 대기오염에 의해서 자주 폐쇄 된다.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상대적으로 짧다. 더 적절한 장소에 새로운 공항의 건설이 고려되었지만 이용자 수는 적는데 비용은 높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몇몇 국내 공항은 국제 시민 항공기구 표준을 준수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몇 개의 예정된 국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모두 4개의 활주로가 포장되었고 그 중 3개와 다른 1개가 활주로에 가로등이 설치됐다. 포장된 모든 활주로의 길이는 2,440m를 넘으며 13개의 비포장활주로는 1,800m를 넘는다. 비포장 활주로는 국내 서비스에서 지난 30년 동안 사용된 무기압 터보 프로펠러를 사용하는데 적절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노선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가압 제트 항공기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도 역시 몽골항공사가 성장하는데 기여를 한다. 회원제도는 해외항공사의 회원과 사업 및 협동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몽골은 6개의 민간 항공사를 운영한다. 민간 항공사가 주로 운영하는 항공편은 전세 항공편(관광 캠프), 그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위치로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편이다. 정부의 정책은 민간 항공 부문 발전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자극시키고 시장 독점을 막으며 해외 투자와 협력을 지지한다.

몽골 항공은 6개의 국제선으로 울란바토르부터 모스크바, 베이징, 서울, 도쿄, 베를린, 그리고 이르쿠츠크까지 운영한다.

항구와 배송

몽골의 내륙에 위치해 항구가 전혀 없다.

몽골은 총 580km의 내륙 수로가 있고 그러나 홉스 골(Khovsgol) 호수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셀렝게(Selenge)(270km)와 오르 혼(Orkhon)(175km) 강도 운영 되고 있지만 장애가 있다. 몽골의 호수와 강이 겨울에 얼기 때문에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5월부터 9월까지만 운영한다.

현재 “수헤바타르(Sukhbaatar)” 배와 3개의 화물선이 및 30개 이상의 모터보트가 홉스골(Khovsgol) 호수에 정박해 있다. 또한 20개 이상의 모터보트가 호브드(Khovd), 도르노드(Dornod), 셀렝게(Selenge) 지방에서 운행되고 있다.

수송

2008년, 2,390만 톤의 화물과 2억 3,160 명의 승객들이 모든 종류의 수송수단으로 수송되었다. 2007년과 비교하여 화물량과 승객의 수는 각각 2.5%(57만4,100톤), 10.3%(2,170만톤) 증가하였다.

2008년, 14만6,000톤의 화물과 4만4,000명의 승객이 철도를 통해 운반되었고, 1,800톤의 화물과 32만 5,500의 승객이 항공으로, 930만톤의 화물과 2억 2690만의 승객이 차량으로 각각 운반되었다.

2008년 수송에 대한 총 세입은 2007년과 비교하여 20.4%(989억 투그릭) 증가하여 4121억(투그릭)에 도달하였다.

2008년, 자동차 조사에 따라 19만500개의 자동차가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하여 17.6%(28,500개) 증가한 수치다. 총 자동차의 40.1%가 10년 가까이 사용되었고 59.9%가 10년 넘게 사용되었다.

2.7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 /ICT/

지난 5년 동안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과학 분야는 몽골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분야로 비춰졌다. 몽골은 해외투자, 기술적 지원, 그리고 과학 선진국들과의 협동이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발전전략으로 “E-몽골” (2010년 국가 프로그램 및 ICT 정책)을 반영하였다.

2004년, 몽골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구를 설립하였다. 국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과학 위원회는 몽골 정부에게 상담 및 자문을 해주는 조직이다.

몽골 정부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정보통신기술(ICT)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었다. 주요 전략으로 정보통신기술(ICT) 2010 비전이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 과 사회구조에 대한 긍정적 조건을 제공하며 국가 정책과 규제제도를 설립한다. 중기(中期)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전략은 다양한 각도에서 2010 비전을 비추고 실현하며 지지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2010 비전 설립이후 적당한 법률과 “2010년까지의 정보통신기술(ICT)발전 개념”, “2021년 농촌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대한 완벽한 계획”, “E-몽골”과 같은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정보통신기술청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중이다. 여기에는 부문의 독립화, 경쟁 심화, 부문발전에 대한 법적 환경의 정교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간산업의 발달, 전자 정부를 포함한 전자소비, 정보 격차, 모두에게 제공되는 법적 환경의 정교화, 인터넷 가격 저하와 접근의 증가 등이 있다.

몽골의 경제 발전은 최근 기간산업의 개발구역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정부의 상대적 전향정책은 민간부문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이끌도록 촉진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는 건물 기반 시설 사업에 기회를 부여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혁명의 틀에 따라서 세계화의 경향, 전국적인 광대역 네트워크, 2007km 길이의 케이블 전송시스템, 11,000km 길이의 케이블 네트워크로 구성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질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2500km 길이의 디지털 라디오 선은 21개의 지방 및 167개의 큰 마을과 촌락에 전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 사업발전 분야에 종속되어 있는 민간단체를 지지하여 좋은 결과를 낳았다.

현재 몽골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개발 단계와 앞으로의 필요성과 발전성향, 그리고 정부의 지시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회사가 설립되었고 핵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발달시키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동등한 이용조건을 제공한다.

정부는 개인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개입한다. 국가 산업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의 지지, 정보의 소모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강화 및 촉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활성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 통신

망은 프랑스의 Alcatel, 독일의 EWSD, 일본의 KDD의 국제표준에 따라 설치되었고 개선되었다. 또한 2006년, 몽골의 정보 통신 기관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관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몽골은 American Intelsat, Asiasat-1 와 Intersputnik 의 위성링크를 거쳐 150개국과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핸드폰 서비스, 페이징과 데이터 네트워크, 케이블TV 네트워크가 현재 몽골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두에게 컴퓨터를”, “단 하나의 트루구 인터넷”, “모든 가정의 인터넷 사용” 과 같은 교육의 실행으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발달의 교육, 인터넷 사용의 증가, 컴퓨터와 인터넷 가격의 폭락이 일어났다. 1년 동안 이와 같은 교육을 실행한 결과 3만 가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8만 가구가 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는 40만을 넘어섰다. 1년 전 기준 70Mbc 이었으며 올해 몽골 인터넷의 국제적 사용량 155Mbc 인데 아직도 목표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발달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이 분야에 대한 특정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부문에 대하여 국민은 회사 및 기관으로부터의 디지털 교육과 건강분야의 정보과학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 받고 이에 대해 정부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몽골은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며 또한 합당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몽골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의 발명 및 공급 장치의 개발과 국제 시장에 대한 정보 기술,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목표에 맞춰 정보기술 벤처기업과 아웃소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정보기술원이 세워졌다. 정부는 이러한 부문과 국제시장 진출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도 실행하였다.

작년에 몽골 전국에 4만6천 명의 인터넷 가입자, 4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케이블 TV를 신청한 가구는 8만 가구였다. 농촌과 도시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는 매우 크다. 철도를 따라서 놓인 광섬유 케이블은 이미 설치되어 작동중이다.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주요 지역들을 횡단한다. 정부는 이 시설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편 및 통신

2008년 말, 몽골에서 우편과 통신 분야로부터의 수익은 3434억 투그릭 이었고 2007년과 비교하여 전화기의 숫자는 1400대 증가하였다.

2008년 말, 35,400대의 무선 전화기가 있으며 1,745,900명의 휴대폰 사용자, 101,300 명의 케이블 TV 가입자가 있었다. 2007년과 비교하여 무선전화기는 40.9%(10,300대) 증가하였으며 핸드폰사용자와 케이블TV 가입자는 각각 48.6%(570,800명), 13%(11,600명) 증가했다.

2008년 말, 대부분의 소음(soum)이 휴대폰서비스로 연결되어 있다.

2008년 말, 649,800개의 등기, 21,300개의 소포, 18,975,900개의 정기간행물이 몽골 우편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배달됐다.

2.8 은행 및 금융

몽골 은행은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다. 2005년 몽골에는 300명의 신용카드 소지자가 있었다. 그 이후로 이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오늘날 은행의 신용카드 소지자는 160만명에 도달한다. 이 숫자는 몽골의 전체 인구 절반을 넘는 숫자이다. 이 집계는 몽골의 은행 제도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를 보여준다.

몽골의 현재 은행과 금융 부문 상태는 과거의 이자율 폭등, 금융 서비스와 관련 법률 시스템의 미비, 신용불량자 증가라는 열악했던 90년대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에 16개의 주 은행, 1,057개의 지점망은 340만 명의 은행고객과 예금 소유자의 업무처리를 도와주었다. 상업 은행의 현재 계좌나 예금은 공공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부터 허용한 현재의 계정 잔액과 정기예금으로 인하여 성장하였다.

〈표 6〉 몽골의 화폐 및 금융 집계

(단위 : 10억(투그릭))

No	지표	2007	2008	2009	2010
1.	유통 통화발행	224.6	338.5	346.6	355.6
2.	은행 외부 통화	174.2	265.9	278.3	287.7
3.	경상 계정(Dom 환율)	160.7	285.9	280.8	256.0
4.	경상 계정(For 환율)	208.6	252.9	284.6	334.6
5.	국내통화예금	734.9	1,121.9	922.6	1,032.6
6.	해외 통화 예금	277.5	380.5	493.6	491.7
7.	통화공급	1,556.0	2,307.3	2,259.9	2,400.6
8.	총 자산	1,809.3	2,690.2	2,768.5	2,887.6

참조: "월별 통계 공지", 몽골은행, 2009년 4월

주요 상업은행들은 새로운 지점들을 열면서 활발히 운영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은행의 지점망 개수는 작년과 비교하여 76개(7.7%) 증가하였다. 비 은행 금융기관 역시 몽골의 금융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전체 인구의 몇몇 사람들에게 대한 은행 서비스의 부재를 해결한다.

비록 몽골 금융 시스템의 주요지표가 안정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구리 가격의 하락과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하여 신용거래의 빠른 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9 관광

본국행과 외국행 승객들

2008년, 본국행과 외국행 승객들의 숫자 300만 명(중복)은 이민국을 통해 나가거나 여행을 하였다. 이 수치는 2007년에 비해 183,800명(6.4%) 증가한 수치이다. 2008년 이민국을 통해 들어오는 승

객들 중 53.2%가 자민우드(Zamin Uud), 17.0%가 알탄 블라그(Altanbulag), 2.6%가 시비쿠렌(Shivee Khuren), 기타(18.1%)에서 들어왔다. 2008년, 468,800명의 외국인들이 몽골을 방문했고 이는 2007년보다 14,000(31.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몽골을 방문한 해외 승객들의 96.4%가 90일 이하 체류하였고 2%가 90일 이상 머물렀다. 이민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 중 61.4%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시민들이었다. 유럽인 34.4%, 미국인이 3.4%, 중앙 아시아인이 0.3%였으며 0.5%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민들이었다. 2008년, 446,400명의 관광객들이 입국하였다. 2007년과 비교하여 5400명(1.2%)가 줄었다. 이민국을 거쳐 들어온 외국인들 중 59.8%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민들이었고 35.8%가 유럽인들이었으며 미국인이 3.5%이었다.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국민이 0.8%이었다. 2008년 이민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1,056,600명의 몽골인 승객들 중에 87.3%가 개인 용무로 출국하였다.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들 중 92.6%가 중국(790500명), 러시아(145,300명), 한국(43100명)을 여행하였다. 외국행 몽골인 승객들 중에 96.5%가 최대 30일까지 머물렀다.

관광부문의 주요 활동

몽골의 관광은 1990년대부터 민영화 되었다. 몽골은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면서 관광산업이 급격히 발전했다. 1995년에 정부는 1995년과 2005년 사이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결정했다. 2000년, 국회는 관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 목적을 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더욱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 정부와 유럽연합의 Tacis 프로그램의 도움을 통해 몽골정부와 함께 “몽골 관광 국가 프로그램 종합계획”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몽골 관광업의 발전을 세계 관광업의 발전과 함께 중요시 여겨보아야 한다.

몽골의 공공기관과 비 공공기관 및 개인회사들은 몽골이 국제 관광업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관광업발전의 중요성을 주기적으로 내세웠다. 몽골 경제의 중요 부문중 하나인 관광 부문은 수입이 2억1000만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국가 총 이익의 10%에 달한다. 최근에 관광업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10개국의 부처와 정부 사이에 협력을 위한 계약들이 체결되었다. 또한 2005년 일본과 중국에 몽골 관광 정보 센터의 지부가 성공적으로 개설되었다.

세계 관광기구의 회원국인 몽골은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몽골을 외국에 알리며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큰 규모의 관광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들 전시회에는 영국의 세계관광전, 독일의 국제관광 박람회, 러시아의 모스크바 국제관광전, 한국의 국제관광전, 중국의 베이징 박람회, 일본 세계여행박람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업이 매우 발달한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03년을 공식적으로 몽골 방문의 해로 지정했으며, 2004년은 몽골 발견의 해로 지정했다.

그 결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일을 계획했다.

- 몽골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관광업 발달을 위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 관광객의 안전에 힘쓴다.

- 몽골의 유적지를 보호한다.

국제연합은 대몽골 제국의 8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것은 여러 관광기구들이 그들의 관계를 넓히며 관광산업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다양한 행사를 위한 큰 규모의 사업은 관광기구들로부터 설립된다. 따라서 경제적 수용력을 높이는 것과 문제점 및 관료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을 위한 법적 환경

몽골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인 개발 및 진취적인 사업을 위한 법적 환경이 만들어졌다. 2000년 관광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10개가 표준화되었다. 관광기구, 관광 캠프, 호텔, 가이드 분류를 위해 세부적인 법률사항이 만들어지고 승인되었다. 관광 법에 따라서 민간조직은 반드시 몽골의 관광업 발전을 도우는 국가와 협력해야한다.

예시:

- 관광업 정책을 통합하는 전국협의회는 관광을 운영하는 데에 책임이 있으며 1등급 호텔 안내에 대한 분류 절차를 담당한다.
- 전국 협의회는 국가의 활동과 민간 기구를 조직한다.
- 2002년부터 관광업에서 민간 기구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업을 운영하는 특별자격증을 없앴다.
- 몽골대사관이나 평의회, 대리인이 없는 국가들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은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한다.
- 최근 몽골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관광의 법적인 환경 정도를 나타내는 패키지 투어 전문여행업자의 수를 초과하였다.

관광업 발전 위한 국가 정책

몽골 정부는 몽골의 관광업이 경제의 주요 부문 중 한 부문으로 자리 잡도록 관광업 발전을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관광업이 대외관계를 협력시키고 발전시키며 투자를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고 관광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연산업”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관광업은 전쟁, 빈곤, 자연재해, 전염병, 테러 등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러 국가의 과거 다양한 관광업 사례는 관광업이 경제와 정치적 요소에 민감한 사업임을 말해준다.

연구에 따르면 몽골은 1년에 450,000~500,000명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모를 위한 관광 준비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향한 세계 관광 흐름에 기반을 둔 정책 아래 수행되었다.

때 묻지 않은 깨끗한 땅은 몽골 생태관광의 주요자원이다. 따라서 관광업 발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생태환경을 해치지 않고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며 인적 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몽골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적어도 주요 관광 지역인 테릴지 국립공원(Gorkhi - Terelj)이나 후웁스굴 호(Khuvsgul Lake)의 생태균형을 예의주시하고 보호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 관광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연구부문을 개발한다.
- 특수지역 발달을 바탕으로 한 몽골 관광 종합계획을 만든다.
- 내수 관광을 발달시킨다.
-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세밀한 정책을 수행한다.
- 관광을 계절성과 독립시킨다. 특히 겨울 관광을 개발한다.
- 주변국 관광객들의 입맛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
- 해외투자자와 지원으로 관광객 수용 규모를 늘린다.
- 자연과 환경에 유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을 개발한다.
- 몽골 관광 장기 홍보 전략을 세운다.
-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맞춰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해외 기준에 맞춰 대학과 교육 기관의 문화적 수준 및 프로그램을 발달시킨다.
-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관광을 통해 얻은 총수익의 일부를 분배한다. 이것은 몽골의 역사, 문화, 생태관광의 발전에 대한 이익과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몇 년 동안 몽골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몽골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매년 15~20% 증가하며 2006년 총 관광객 수는 386,000명으로 측정되었다. 현재 200개 이상의 관광사, 320개 이상의 호텔, 200개 이상의 관광 야영지, 182명의 관광 안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가이드가 있다. 40개의 국립 및 사립대학은 전문가 수준의 관광 안내원을 육성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몽골의 관광업에 대한 사업과 법적 환경이 잘 발달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몽골의 외국인 투자

3.1 몽골을 선호하는 이유

- **전략적 위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력을 지닌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접경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국제적 시장으로서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 **수출 기회:** 몽골은 약 7,200개의 상품에 수입쿼터나 다른 양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관세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특혜관세(GSP)를 받는 특혜 수혜국이다.
- **풍부한 천연 자원:** 몽골은 금, 구리, 우라늄, 석탄, 몰리브덴, 기름과 같이 풍부한 광물 자원과 캐시미어, 양털, 가죽과 같이 풍부한 동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작이 가능한 1.3 헥타르의 토지와 4,300,000 마리의 가축이 있다.
- **경쟁력 있는 사업비용:** 몽골은 임금, 원료비, 그리고 운영비가 낮다. 시간당 제조비는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으며 산업 부지 및 사무 공간의 임대료가 낮고 주변 지역 국가 중 최저 세율을 자랑한다.
- **유리한 투자 환경:** 외국인 직접투자는 몽골의 헌법과 국제조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보호 받는다. S&P는 몽골의 신용등급을 BB- 로 평가했다.

3.2 몽골 관련 국제 조약

- 몽골은 1997년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 1996년에 “1965년 투자 분쟁 조정에 관한 워싱턴 협약”을 체결하였다.
- 1999년에 “1985 년의 투자 보험에 관한 서울 협약”을 체결하였다.
-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 투자 보증 기구(MIGA)의 회원이며 투자자들은 이곳을 통해 투자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다.
- 몽골은 각각 41개국과 “상호 투자 보호 및 증진 협정”을 체결하였다.
- 34개국과 “이중 과세 부과 금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3.3 외국인 투자 보증

몽골 헌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및 이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보완한 외국인 투자법을 보호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는 몽골이 속해 있는 국제조약 및 협정으로도 보호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및 자산의 국유 및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몽골 국내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유에 관한 권리, 자본 및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대우를 똑같이 받는다.

외국인 투자법의 제 2장 8조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1. 몽골의 영토 내에서 외국인 투자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헌법과 이러한 내용에 상응하는 다른 법률 및 몽골이 일원으로 되어있는 국제조약에 의해 합법적 보호를 받는다.
2. 몽골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불법적으로 몰수될 수 없다. (국유화란 명칭의 사용은 이 문장에서 법에 의해 2002년 1월3일에 삭제되었다.)
3.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 혹은 전액 보상에 대한 지불이나 비차 별 근거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몰수 될 수 있다.
4. 이때 보상금은 몰수 당시의 평가금액 또는 시중가로 이루어지며 즉시 지불된다.
5. 국가 위기상황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입은 손실은 몽골 투자자들로부터 입은 손실과 동등하게 여긴다.

3.4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법률 조항 제 4조를 기반으로 투자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는 몽골법에 의해 금지되어있는 분야가 아닌 생산과 서비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금지된 활동은 인허가법 조항 제 8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 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이상 다음 활동은 몽골에서 금지된다.
 - 아편, 마약의 생산 및 수입과 판매
 - 포르노 제작물, 혹은 어떠한 방법과 이유로 이것을 지원하는 행위
 -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것
 - 다단계 마케팅이나 피라미드 구조를 통하여 카지노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사기 행위
 - 카지노 사업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조항은 법과 자유지역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인 투자는 몽골법에 금지되어있지 않은 종류의 생산 및 서비스가 행해지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보호지역 법(Protected Area Law)”의 제 7장 33조는 보호지역 토지 착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토지개발은 외국법인, 국제기구, 외국 시민, 무국적자, 보호구역안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금지되어있다.
 - 위의 조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보호구역의 적절한 영역에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및 국제기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3.5 투자 인센티브

2008년 3월5일, 정부의 83번 결의안이 해결 주요부분 순서로 재승인 되었다. 예를 들어

- 산업 분야: 가공유 생산 및 직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 혼합한 석탄과 석유의 액체연료 생산, 철과 강철 생산, 코크스 화로로 가공 상품을 생산 및 철과 강철을 사용한 생산
- 농업 분야: 부과적인 활동에 대한 관개장비/ 농업 부문의 농업 생산을 촉진하는 관개농업
- 전기와 가스의 생산
- 건설 분야: 분리수거 및 재활용 기구, 국제 표준에 따른 관광객 복합 서비스 센터
- 경공업: 신발을 생산하기 위한 섬유판매, 가공 가죽 및 피혁

2007년 1월1일 이후 10%의 투자 세금공제가 몽골의 투자 우선순위 분야에 부여 되었다. 이 세금 공제는 새로운 생산과 서비스의 시작, 현존하는 몽골의 우선순위 생산과 서비스 분야의 확장 및 혁신을 위해 신용자산에 대한 투자분야에서도 시행 될 것이다.

더욱이, 노동과 사회 보장 관련 투자에 대한 법률 조항 제 24 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사업체와 외국 법인 지점으로부터 고용된 외국시민들은 몽골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세금을 낸 이후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와 해외 무역 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국인 투자자 ID 카드를 발급한다. 외국인 투자 및 대외 무역기관은 작업 허가증을 면제 받는 것과 동등하게 외국인 투자자들과 대외 투자 회사의 최고 경영자 및 몽골 주재원 사무소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주허가증과 복수입국비자를 외국인 ID 카드를 발급한다.

일반 특혜 관세 제도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신흥시장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두 개의 주변국보다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 몽골 상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시장 진입 특혜를 받으며, 2005년 유럽위원회는 몽골을 일반 특혜 관세(GSP)에 대해 특혜수여국가로 승인하였다. 이것은 몽골이 약 7,200개의 상품에 대해 할당액 및 다른 양적 제한 없이 무관세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해 자금을 조달받은 기업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몽골의 산업분야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다양화하며 경제 안정성을 높인다.

4

사업 시작 절차

4.1 몽골에서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한 세 단계

- 1 단계: 대외무역투자기구(FIFTA)로부터 외국인 투자 허가 증명서를 얻는다.
- 2 단계: 국가 등록 사무소로부터 국가 등록 자격증을 부여 받는다.
- 3 단계: 국가 인감 사무소로부터 인감을 받는다.

4.2 첫 번째 단계 : 대외무역투자기구 (FIFTA: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

FIFTA는 국가 행정기관이다. FIFTA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정책 및 법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연구, 투자 관측활동의 체계적인 조직,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외국인 투자자 유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 투자 통계 정보 제공, 외국 법인 지점이나 외국인 투자와 함께 사업체에 대한 설립의 찬성 유무, 일시적이거나 완전한 외국 법인 지점이나 외국인 사업체의 활동 및 다른 특정한 활동에 대한 입법 권한이 있다.

FIFTA의 투자, 등록, 서비스 부문은 몽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을 지원하며 투자자들이 모든 등록 절차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로컬 네트워크 시설을 제공한다.

- 선 가입 서비스를 통하여 투자자들은 세금, 관세, 노동 및 기타 사업 등록 협회와 같은 주요 정부 당국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는다.
- 등록 서비스는 투자자의 신청서에 근거해 외국인 투자 또는 대표 사무소에 법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 후 등록 서비스는 투자확대 및 사업운영을 촉진하는 투자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범위는 자본 및 설비재의 수입, 거주 허가를 위한 ID카드 발급, 복수입국비자 발급 및 어려움에 처해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가이드 제공 등이다.

4.3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세우는데 필요한 문서 목록

□ 지원서

대외무역투자기구(FIFTA)로 제출한다.

□ 투자자 소개

- 개인일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며 투자자 양식을 작성한다.
- 법인의 경우 회사의 간략한 소개와 사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 회사명 허가증

- 몽골의 국가 등록 사무소에서 취득할 수 있다.

□ 은행 허가

- 투자자의 국내 대리 은행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회사의 법령 및 계약서

- 만약 회사가 단 한명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령만 필요하다. 만약 회사가 두 명 이상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령과 계약서 모두 필요하다.
- 법령 및 계약서는 몽골어와 투자자들이 선택한 다른 언어 한 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 최소 4개의 복사본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각 복사본은 공증인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 초기 투자한도가 10만(\$) 이하여야 한다.

□ 회사 주소

회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적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인 경우 해당 건물의 임대 계약서를 제출한다.

□ 타당성 조사

각 회사가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서 혹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4.4 투자자용 등록 양식

“.....” ХХК /Co.,LTD		
Овог/ Last name	Нэр/ First name	
Иргэний харьяалал/ Nationality	Төрсөн огноо/ Date of Birth ____ - ____ - ____	
Паспортын №./ Passport No. _____	Хүйс / Sex: Эр/Male <input type="checkbox"/> Эм/Female <input type="checkbox"/>	
Гэрчилгээний дугаар / Certificate # ____ - _____	Гэрчилгээний дуусах хугацаа / Date of expiry ____ - _____	
Албан тушаал Job position		
Дүрмийн сангийн хэмжээ баХО-гчийн хувь /%, хэмжээ /\$/ Total and Share capital & percent	ХЭМЖЭЭ Дүрмийн сангийн хэмжээ - _____ \$ хувь хэмжээ Үүнээс ХО-гчийн ____% _____ \$	
Монгол улсад оршин суугаа хаяг Present address in Mongolia		
Утас;И-мэйл;Вэб сайт; Phone №.; E-mail; /Website;		
Компанийн оноосон нэр Name of Company	/монгол хэлээр / / for English /	

Гарын үсэг/ Signature:- _____ Огноо /Date:

4.5 몽골 유한 합작 회사 설립에 대한 계약서 표본

일반조항

몽골 법률에 따른 몽골 회사 “.....” 법인 (이하 A 로 총칭함)
.....의 법률에 따른회사 “.....” 법인 (이하 B 로 총칭함)

민법, 외국인 투자법, 상법, 세법, 사업체 소득세법과 각각의 법률 및 규정, 그리고 몽골과 국제 무역 관행 뿐만 아니라 무역 적합성 및 평등과 상호이익 원칙에 준수하여 몽골에 유한 책임 합작 회사 (JVC)를 설립하고 그 목적을 위해 본 계약을 공식화한다.

제1조 합작회사의 사업 활동 목적

- 1.1. 합작회사(JVC)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1.2. 합작회사(JVC)의 제품은 몽골과 국제적 생산 기준에 따라야한다.

제2조 합작 계약의 당사

- 2.1. 본계약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당사 “A”.....몽골의 법에 의거하는 법인,(법인의 주소, 전화, 팩스는..... 다)
 - 타사 “B”..... 법에 의거하는 법인, (법인의 주소, 전화, 팩스는..... 다)

제3조 권리와 의무

- 3.1. 양측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3.1.1. 당사 "A" 의 의무:
 - 3.1.1.1. 몽골 대외무역투자기구(FIFTA),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 몽골의 대외 무역기관 (Foreign Trade Agency of Mongolia)에서 취득한 합작회사 등록증과 국가등록 사무소에서 취득한 투자허가서에 의거해 회사 법률을 제정하고 등록자본을 납부한다.
 - 3.1.1.2. 합작 계약 및 법령에 근거하는 관련 국가 기관에 합작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은행계좌를 열고 인감을 만들며 예비 작업을 한다.
 - 3.1.1.3. 합작회사의 노동자 및 직원의 훈련을 지원한다.
 - 3.1.1.4. 합작회사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이 거주, 노동 허가증 및 출입국 비자를 취득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집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 3.1.1.5. 합작 회사와 타사 "B"에게 각각 몽골의 법과 규정 및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3.1.1.6. 개인에 대해 협의회 의원, 회장, 전무이사에 관한 선거를 제안한다.
 - 3.1.2. 타사 “B”의 의무
 - 3.1.2.1. 몽골 대외무역투자기구(FIFTA),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 몽골의 대외 무역기관

(Foreign Trade Agency of Mongolia)에서 취득한 합작회사 등록증과 국가등록이사회(State Registration Board)에서 취득한 투자허가서에 의거해 회사 법률을 제정하고 등록자본을 납부한다.

- 3.1.2.2. 합작회사에 필요한 원자재, 기계 및 장비, 그리고 기타물품의 구입을 지원한다.
- 3.1.2.3 제 3 국가의 시장에 합작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실시한다.
- 3.1.2.4 JVC의 등록자본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법적문서를 준비한다.
- 3.1.2.5. 합작회사의 노동자 및 직원의 훈련을 지원한다.
- 3.1.2.6. 개인에 대해 협의회 의원, 회장, 전무이사에 관한 선거를 제안한다.
- 3.2. 당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3.2.1. 공평하게 합작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 3.2.2. 합작회사 활동을 증진시키며,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혁신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진 의회 제안(Council Proposal)을 제출한다.
 - 3.2.3. 배당금을 받는다.
 - 3.2.4. 합작회사의 등록 자본에 배당금을 재투자한다.

제4조 합작회사의 이름, 장소, 권한

- 4.1. 합작 회사명
 - 4.1.1. “.....” 로 몽골어 이어야한다.
 - 4.1.2. “.....” 주식회사(영문)로 되어있어야 하며 등록사무소는 도시/지방/.....에 위치하여야 한다.
- 4.2. 합작회사의 법적 주소는 이어야 한다.
 - 전화.....
 - 팩스.....
- 4.3. 국가 등록 사무소에 등록함으로써 합작회사는 몽골법에 의거하여 법인으로 등록되고 이 날짜로부터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법인으로써 합작회사의 등록 날짜는 설립날짜와 같다.
- 4.4. 합작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외국 및 몽골 조직과 계약 및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획득하며 법정과 중재기관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 4.5. 합작회사는 타사의 의무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타사역시 합작회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6. 합작회사는 회사 자산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4.7. 합작회사는 당사 국가의 영토뿐만 아니라 해외에 지점과 연락소를 세울 수 있다. 지점은 법인의 권리가 없으며 합작회사의 협의회로부터 채택된 양식에 따라 회사 활동을 조정하여야한다.

제5조 합작회사의 공유 자본 및 등록 자본

- 5.1. 합작회사의 등록 자본은 자사의 기부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총액은백만 투그릭 이나 1,000(\$ 다. (1\$ =투그릭)

- 5.1.1. 합작회사에 대한 당사“A”의 등록자본 기부금액은 총금액의.....% 로 구성되어야 하며백만 투그릭(.....천 달러) 과 같다.
- 5.1.2. 합작회사에 대한 타사 “B”의 등록자본 기부금액은 총금액의.....% 로 구성되어야 하며백만 투그릭(.....천 달러) 과 같다.
- 5.2. 당사는 아래의 계약서에 따라 합작회사의 등록 자본에 기여를 한다.
 - 5.2.1. 당사 "A":
 - 빌딩
 - 장비
 - 현금
 - 5.2.2. 타사 "B"
 - 장비
 - 현금
- 5.3. 합작회사의 공유 및 등록자금을 목표로 타사로부터 기부된 장비, 자재 및 기타 상품은 부록 1 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 장비, 해외로부터 배달된 자재는 부록 2번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 5.4. 합작회사의 최고 관할 조직의 결정에 의해 합작회사의 등록자금은 수정될 수 있다. 또한 계약 서가 수정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외국인 투자와 대외 무역기구뿐만 아니라 국가 등록 사무소 에 이러한 변경을 14일내에 알려 인증서를 수정해야 한다.
- 5.5. 합작회사의 최고관할조직은 각 구성원들이 합작회사의 등록 자본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 는 투자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6조 합작회사의 운영

- 6.1. 합작회사의 최고 관할기관은 주주총회이다.
- 6.2. 주주총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될 수 있으며 특별히 소집되어 질 수도 있다.
- 6.3. 정기 주주총회는 합작회사의 매 회계연도 말 4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 6.4.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합작회사 이사회의 이사장은 주주총회를 통 해 다른 사람이 선출 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 6.5. 특별 주주총회는 공고에 의해 열리며 이사회의 주도에 의해 소집된다.
- 6.6. 위원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 6.6.1. 법령을 개정하거나 개정된 법령을 승인한다.
 - 6.6.2. 통합, 합병, 분할, 분리 또는 변형을 통해 합작회사를 개혁한다.
 - 6.6.3. 합작회사의 채무를 지분과 교환한다.
 - 6.6.4. 합작회사의 종류를 바꾼다.
 - 6.6.5. 합작회사의 지분을 분할하거나 통합한다.
 - 6.6.6. 이사회의 회원을 선출한다.
 - 6.6.7. 합작회사의 재정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를 논의 하고 승인한다.
 - 6.6.8. 회사 보통주의 소유자가 보통주나 몽골법 39조에 제시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다른 증권을

- 부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것에 대한 선제권리를 결정한다.
- 6.6.9. 회사 법률 11장에 명시된 주요 거래를 승인한다.
 - 6.6.10. 회사법률 12장에 명시된 이해관계 거래를 승인한다.
 - 6.6.11. 합작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승인한다.
 - 6.6.12. 주주총회때 기타 문제들을 논의한다.
 - 6.7. 회의록은 주주총회로부터 15일 뒤에 작성되어야하며 주재하는 이로부터 서명을 받아야한다.
회의록에 관한 책임은 총회를 주재하는 사람이 맡는다.
 - 6.8. 주주총회에 관련된 문제는 몽골법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 6.9. 합작회사의 최고 통치기관 형성은 외국인투자 및 대외무역기구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 6.10. 합작회사의 최고 통치 기관은 합작회사의 구성원들로부터 지명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위원회 의원들은 위원회의 선출 권한으로 회장을 임명하며 일정기간동안 두 국가의 시민들은 본인의 나라를 각각 번갈아가면서 총회를 주재한다.
 - 6.11. 위원회의 총회는 적어도 1년에 ()번 소집하며 특수 총회는 위원회의 의원들이나 경영 및 일반 이사들로 부터 수시로 소집되어질 수 있다.
 - 6.12. 일반이사는 합작 회사의 일일 운영 요청을 수행한다.
 - 6.13. 합작회사의 일반이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과 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에 따라 합작회사의 활동을 지시한다.
 - 6.14. 합작회사에는 위원회로부터 임명된 일반 회계사가 있다. 일반회계사는 위원회와 일반 이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 합작회사의 지분과 보통주 소유자의 권한

- 7.1 몽골의 증권법에 따라서 주식은 회사 주주의 투자를 증명하며 주주총회에서 소유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배당금을 받으며 회사를 청산함에 따라 남은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부터 주주의 배당 점유율을 얻는다.
- 7.2 주식의 두 종류 : 보통주, 우선주
- 7.3 회사는 반드시 보통주를 필수적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우선주는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7.4 주식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액면가를 가질 수도 있다. 액면가는 일정 가격 이하로 발행되지 않는다.
- 7.5 각각의 보통주는 회사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각 문제에 대하여 한 개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7.6 주식은 분할 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로 등록되어야 한다.
- 7.7 합작회사의 현장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를 명기하며 현장이 우선주를 명시한 경우 합작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7.8 발행된 주식은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발행되고 보유된 수권주식이다. 정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 종류의 발행된 주식 수와 발행에 대한 약관은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각 종류의 발행 주식 개수는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 명시되어야한다.
- 7.9. 어떤 종류의 수권주식이든 그 개수는 발행된 총 주식의 개수, 혹은 유가증권의 전환에 필요한

주식의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 7.10. 회사로부터 발행된 주식은 회사로부터 인수 또는 상환되거나 다른 증권이나 재산으로 변환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7.11. 회사로부터 인수되거나 상환된 주식은 미발행수권주식으로 간주된다. 정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발행수권주식은 회사로부터 재 발행된다.
- 7.12. 합작회사의 보통주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7.12.1. 모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거하여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 7.12.2. 회사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의 조항이 만들어진 후에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7.12.3. 회사를 청산함에 따라 남은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부터 주주의 배당 점유율을 얻을 수 있다.
 - 7.12.4. 정관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발행된 주식과 관련된 증권 구입에 대한 선매권을 얻을 수 있다.
- 7.13. 특정 이용약관에 따라서 회사의 보통주 소유자는 회사가 발행한 일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보통주를 구입할 수 있는 선매권을 가진다.
- 7.14. 합작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는 몽골의 회사법 36조에 따라서 확립된다.
- 7.15. 합작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소유주는 몽골의 시민, 법인, 외국인 시민, 해외법인, 무국적인 이 될 수 있다.
- 7.16. 합작회사의 설립자와 주주는 다른 회사의 설립자이거나 주주일 수 있다.

제8조 배당금

- 8.1. 정관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익배당결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는 각 주주에게 배당받을 금액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록일자, 배당금 지불날짜를 공지하여야 한다.
- 8.2. 배당 기록날짜는 배당금을 지불하기 위해 결의안이 채택되어진 날짜와 동일하다.
- 8.3. 어떤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의 주당 가치는 동일금액으로 한다.
- 8.4. 정관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배당금은 현금, 재산, 회사의 유가증권이나 다른 사람의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 8.5. 만약 주주가 배당기산일 이후에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경우(단, 배당지급일 이전에) 주주는 주식에 관련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8.6. 배당금을 지불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결의안에 표기된 날짜에 배당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배당금이 표기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주주의 요구에 따라 회사는 특정 주주에게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합작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벌금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8.7. 회사는 상황과 관련된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8.8 합작회사는 몽골의 회사법 48.3조에 따라 우선주에 관련된 배당금을 지불 할 수도 있다.

8.9 만약 회사가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불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9조 노동력

9.1 합작회사는 몽골 내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외국인 채용의 경우 고급인재의 범위 안에서 고용한다. 노동력과 전문가를 유지하는 문제는 노동력을 해외로 파견시키는 것과 해외로부터 노동력과 전문가들을 유치시키는 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9.2 합작회사는 개인 및 집단 노동 계약의 체결, 노동분쟁의 결의, 급여 및 기타 복지혜택, 연금, 수당, 근로자 보호 및 기타 몽골의 규정, 기타 법률, 노동법에 의거한 다른 연관된 모든 문제를 처리 한다.

9.3 노동보험, 세금 및 직원에 대한 급여는 몽골의 법에 따라서 조정된다.

9.4 합작회사의 위원회는 개인 근로 계약서를 승인한다.

9.5 합작회사의 경영에서 내부 규칙은 몽골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합작회사의 내부 규칙은 위원회로부터 채택될 수도 있다.

제10조 합작회사의 경제활동, 세무, 재무, 감사(監査)

10.1 합작회사는 회계장부 및 기록을 보관하며, 주주들과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무제표를 마련한다.

10.2 합작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회계연도의 개시날짜와 종료날짜를 명시하여야한다.

10.3 합작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10.4 합작회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하고 보증 하며 회사의 재무, 경제 활동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회계감사관과 계약할 수도 있다.

10.5 이사회(부재일 경우 주주총회)는 회계 감사관을 정하고 회계 감사관의 권한, 의무, 책임, 그리고 급여에 관한 계약서를 승인한다. 회사의 재무 및 경제활동에 대한 감사는 일반적이거나 특수적일 수 있다. 일반감사는 회사의 연차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이를 보증한다. 회사의 재무 및 경제활동에 대한 특별 감사는 이사회 결의나 회사의 일반주식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될 수 있다. 주주들의 요구에 의한 특별 감사 비용은 주주들이 부담한다. 만약 특별 감사가 회사 경영자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한 손해를 봤을 때 감사비용은 해당 경영자가 지불한다.

10.6 회사 회계 감사관의 요구에 의해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의 재정, 경제활동에 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0.7 회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0.7.1. 대차 대조표

10.7.2. 손익 계산서

10.7.3. 현금 흐름표

10.7.4.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10.7.5.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목록은 각각 거래의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이에 관련된 금액을 보고서에 기입하는 시기에 정해진다.

10.7.6. 주식

10.7.7. 기타 정보

10.8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구조, 조직, 자산, 사업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0.8.1 주요활동에 대한 설명은 회계연도 기간의 보고서, 활동 결과, 전년도대비 활동의 변화, 금년 및 전년도 회사의 구조와 조직에서의 모든 변화

10.8.2 회사의 경영자에게 부여되는 보너스 금액과 회계연도 기간의 회사 경영으로 부터 발생한 지출

10.8.3 회사의 현장에 필요한 정보

10.8.4 이사회는 회사의 연례 주주총회에 자사의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제11조 보험

11.1 합작회사는 몽골법에 의거하여 몽골 보험회사의 모든 종류의 보험을 든다.

제12조 합작회사의 만료와 파산

12.1 합작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나 민법 및 기타 법의 조항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으로 부터 청산될 수 있다.

12.2 합작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주총회로부터 파산되어 질 수 있다.

12.2.1 회사로 인한 손실이 커서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울 경우

12.2.2 0개월 동안 동 계약의 제 3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구성원들이 기여에 실패할 경우

12.2.3 합작회사가 의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불이행하여 계약의 경제적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12.2.4 합작회사 구성원들이 실무경영 및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12.2.5 합작회사 외국인 참가자들의 지분을 몽골 참가자들이 전부 구매할 경우

12.2.6 상호 결정에 따른 합작회사의 파산

12.2.7 합작회사에게 부여된 특별한 면허 및 권한의 만료

12.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파산될 수 있다.

12.3.1 회사가 파산할 경우

12.3.2 어떠한 주주도 들어 설 수 없을 경우

12.3.3 다른 법적 근거로 인해

12.4 주주 결의안에 의해 파산을 제안하는 회사의 이사회(부재중일 경우 집행기관)는 파산에 대한 결의안을 주주총회에서 고려되도록 회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안은 파산 위원회, 파산의 절차 및 시간, 채권자들의 요구를 들어준 뒤 남아있는 회사의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효과적으로 진행 되려면 결의안이 회의에 참석하는 주주들 중 투표할

- 자격이 있는 다수의 투표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 12.5 파산위원회에 임명되면 회사 및 경영기관의 권한은 파산위원회에 넘어간다. 또한 파산위원회는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 12.6 파산위원회는 회사로 부터 초래된 손실이나 위원회의 임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
- 12.7 합작회사가 파산 했을 때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부채를 지불한 이후 회사의 남아있는 자산은 합작회사의 등록 자본에 구성원들이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구성원들은 회사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조취를 취한다. 회사의 자산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하여 어떠한 통화로든지 그에 맞춰 현금으로 바꾼다.
- 12.8 파산 위원회의 의무, 책임, 그리고 작업규칙은 합작회사의 법규에 따라 설정된다.

제13조 의무

- 13.1 합작회사의 자산은 재산과 재산권으로 구성되어있다. 회사는 모든 자산의 확장에 대한 의무에 책임을 진다.
- 13.2 합작회사는 회사의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3.3 주주들은 회사의 의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 이상의 손실위험을 부담한다.
- 13.4 주주 개인, 혹은 관계인이 있는 주주, 회사 주식의 10%를 소유하는 주주,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불법행사의 결과로 인한 개인 자산의 손해 범위에 책임을 진다.
- 13.5 타사에 의거한 계약이 부적절한 성과로 인해 손실을 가져왔을 때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간접적인 손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13.6 구성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합작회사의 참가를 거부한다면 다른 구성원에게 대한 합작회사의 등록/공유 자본의%에 해당되는 금액의 벌금을 지불한다.
- 13.7 만약 어떤 구성원이 합작회사의 등록 자본 출자를 지연한다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하루 지연 금액의%에 해당하는 값의 벌금을 지불한다.

제14조 불가항력

- 14.1 계약에 따른 당사의 의무는 미리 예방 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는 재앙, 즉 지진, 태풍, 화재, 홍수, 전쟁, 폭동, 국가 관할 당국의 수입 및 출입 금지 등의 직간접적인 이유로 완벽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어 질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본 계약의 의무수행은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되어야한다.
- 14.2 이러한 재앙이 몇 달 이상 계속 발생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타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타사로 부터 어떠한 손해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 14.3 재앙과 같은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는 당사는 타사에게 이러한 영향을 받는 기간의 시작과 끝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15조 분쟁 해결

- 15.1 본 계약과 관련된 논쟁, 분쟁, 주장, 불이행, 이행, 효력, 만료 등 모두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 15.2 당사가 분쟁을개월 이내에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은 몽골의 상공회의소에 있는 중재법원에 제출된다.
- 15.3 두 회사 모두에게 법원의 판결은 절대적이다. 판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5.4 당사는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분쟁을 몽골의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회사의 주식 및 인수

- 16.1 합작회사의 지배주식은 회사 보통주의 3분의1 이나 그 이상으로 간주된다.
- 16.2 합작회사 주식의 인수에 대한 지배주식은 몽골 회사법 제 58, 59조의 적용을 받는다.
- 16.3.1 누군가가 합작회사에서 자사의 지분을 제 3자에게 팔거나 양도할 경우 타사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이 통지는 양도에 대한 주소, 항목 이름, 구매가격, 시간 및 기타 내용을 포함한다.
- 16.3.2 상대방은 제 3자보다 더 좋고 유리한 조건에서 협력회사의 지분을 구매할 수 있는 선매권을 가진다. 상대방은 구입에 대한 결정을개월 이내에 통보해야한다.
- 16.3.3 당사는 다른 조항에 특별한 상황이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자사의 지분을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서면의 승인 없이 양도, 저당, 처분 할 수 없다.
- 16.3.4 합작회사로부터 발행된 투자 증명서의 지분은 전체 혹은 일부 양도할 경우 폐기 될 수 있다. 합작회사는 양수인에게 새로운 투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유효해진다.

제17조 합작회사의 기간

- 17.1 합작회사는 설립년도로부터년 동안 운영된다. 당사의 계약 승인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 하며 회사의 파산 일에 효력이 만료된다.
- 17.2 만약 당사가 이 계약을 연장할 경우 타사에게 계약만료일로부터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 17.3 위원회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당사는 외국인투자, 대외투자기관 및 국가 등록 사무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 언어

- 18.1 본 계약서는 각각 몽골어와 영어로 작성되고 복사되었다. 계약서 전문 모두 동등하게 인증되었다.
- 18.2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대해 분쟁 발생 시 몽골어 전문이 우선권을 가진다. 합작회사의 정식 언어는 몽골어와 영어로 한다. 합작회사의 공식 언어는 몽골어로 한다.

제19조 준거법

- 19.1 본 계약의 구성 (유효, 구현, 수정, 만료) 은 몽골의 해당 법률과 규정을 따른다.
- 19.2 합작회사는 몽골의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조 기타 조항

- 20.1 당사는 본 계약서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수정 할 수 있다.
- 20.2 본 계약서는 서명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전의 협상, 거래처, 원본, 조서 및 다른 정보 들은 효력이 없어진다.
- 20.3 본 계약은 200x 년 에/도시명/지역명/ 에서 승인됨
당사 "A" 타사 "B"

4.6 몽골의 법인 설립 허가서 및 유한합작회사

일반 조항

몽골의 회사 “.....” 를 당사 "A" 라 칭하고기업을 타사“B”라 칭하며 나머지를 총체적으로 구성 원이라 칭한다. 이는 합작회사의 협정뿐만 아니라 몽골의 민법, 외국인 투자법, 기타 관련법 및 규정 에 의거하여 몽골의 영토에 설립된 합작회사의 법령을 채택하였다. 특정일자.....(이하 "계약서" 라 총칭함.)

제1조 합작회사의 상호명 및 등록사무소

- 1.1 합작회사의 몽골명은 "....." 라 하고 영문명은 ".....Co, Ltd" 라 한다. 그리고 회사의 등록사 무소는 몽골의 "....." 에 위치하여야 한다.
- 1.2 합작회사의 법적 주소는 라 한다.

제2조

- 1.1 합작회사의 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당사 "A": 회사 "....." 와 해당 주소는
타사 "B": 회사 "....." 와 해당 주소는

제3조 합작회사의 권한

- 3.1 합작회사는 몽골의 등록 기관에 등록된 날짜로부터 법인이 되며 유한책임을 진다.(이하 Co.Ltd이라 칭한다.)
- 3.2 합작회사는 외국 및 몽골의 조직과 같이 계약과 협정을 자신의 상호 명으로 체결 할 수 있으며 재산 및 비 재산을 획득하며 법정과 중재기관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의무가 있다.
- 3.3 합작회사는 당사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사역시 합작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4 합작회사는 회사의 등록자본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 3.5 합작회사는 회사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당국의 허가에 따라 회사의 제휴사무소와 연락사무소를 세울 수 있다.

3.6 합작회사는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식표제가 들어간 고유의 인감 및 공문을 소유한다.

제4조 합작회사의 목적 및 사업 활동

4.1 합작회사는 다음과 같은 모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합작회사의 제품은 몽골 및 국제 해당 상품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제5조 등록 및 공유 자본

5.1 합작회사의 등록 자본은 구성원들의 총금액(USD)을 기부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제6조 의회

6.1 구성원으로 부터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된 총회는 합작회사에서 최고 관할 기구이다. 총회의 임원들은 총회장을 선발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모임을년 동안 두 국가에서 돌아가며 주관한다. 총회장은 회의를 통해 선발되며 주요 임원들로부터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

6.2 총회는 최소 1년에 한번은 소집되어야 하며 특별총회는 합작회사의 일반 이사, 경영이사 및 의회임원들의 제의에 따라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6.3 총회는 최고 집행 기관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6.4 총회 임원들은 총회장의 사전 통보로 보좌관들을 지명 하며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6.5 당사는 아무 의견 없이 임명한 의회임원을 소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당사는 타사 및 간부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6.6 만약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권한을 잃었을 경우 부회장이나 다른 의회임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6.7 총회장은 총회를 주관한다. 의회임원들은 회의일자로 부터 14일전에 총회 개최 시간 및 여정을 서면으로 통보 받는다.

6.8 총회장은 합작회사 설립 후 30일 이내에 첫 번째 의회 소집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6.9 총회는 정족수가 총회 임원수의 3분의2 이상일 때나 주주들의 50% 이상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의회 임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이를 참석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엔 회의 전에 총회장에게 서면으로 대리인을 알려줘야 한다. 모든 임원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을 대신하여 의회 회의에서 투표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총회임원을 대신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의회 임원인 동시에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도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의회 임원이 자신의 대리인을 임명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에 참석하는 권한을 박탈당한다.

6.10 각 의회임원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회장이나 다른 임원들이 결석할 경우 두 번째 투표나 캐스팅 보트(결정투표)를 할 수 있다.

6.11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의회의 만장일치로 해결되어야 한다.

6.11.1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장기정책과 합작회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6.11.2 합작회사의 경영 방식 및 조직 구조를 정하거나 일반이사, 대리이사, 회계과장을 임명, 그들의 보수를 결정할 때

- 6.11.3 합작회사의 예산, 대차 대조표의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을 정할 때
- 6.11.4 합작회사의 이익을 분배하거나 기금을 설정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수당을 결정할 때
- 6.11.5 구성원들로부터 등록 자본과 기부 비율을 바꾸기 위해
- 6.11.6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그들의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 6.11.7 몽골의 영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작회사의 제휴 및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게 위해
- 6.11.8 법령을 수정하기 위해
- 6.11.9 새로운 구성원을 수용하고 나가는 구성원의 최종 계정을 청산하기 위해
- 6.11.10 합작회사의 청산과 합병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양도하기 위해 다른 문제들은 의회 구성원들로부터 과반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 6.12 의회 회의는 외국어로 진행되며 비서에 의해 기록된다.
비서는 회의록을 회의가 끝난 이후 14일 이내에 의회 구성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회 구성원이 회의록을 수정 하고 싶다면 서면으로 의회장 및 다른 구성원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결정되었다면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되며 제6조의 관련 법령에 의해 특수한 목적의 회의가 소집된다. 회의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의안건에 포함된다. 회의록이 토론한 문제점이나 해결된 문제점을 전혀 담지 않고 있는 경우에 회의록 영수증이 의회장이나 다른 구성원들에게 7-10 일 이내에 주어져야 한다. 회의록은 모든 의회 구성원, 의회 장, 비서들이 서명해야 하며 사본을 각각 모두 한부씩 보관해야 한다. 의제 문제는 회의록의 수락 하에 결정된다. 의회 구성원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회의록에 접근 권한이 있다. 회의록은 의회 구성원들의 이름과 주소, 의제, 대리인, 그리고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 6.13 필요한 경우, 회의를 거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서명을 모아서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의 진행은 9,10,11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야 한다.

제7조 경영

- 7.1 일반이사가 이끄는 합작회사의 경영은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는 두국가의 시민들 사이에서 1년 임기의 일반이사를 지명한다.
- 7.2 일반이사는 의회로부터 받은 권한과 계약서 및 법령에 명시된 대로 역량에 따라 합작회사의 활동을 설정한다.
- 7.3 합작회사의 경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합작회사를 등록하고, 은행계좌를 열며, 인장을 발급하며 다른 일들을 준비한다.
 - 수출입 허가서를 받고 무역과 서비스에 필요한 물품과 용구를 배달한다.
 - 합작회사의 생산과 서비스를 조직하고 인원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
 - 합작회사의 기술을 향상 시키고 효율성을 높인다.
 - 총회에 대차 대조표와 자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합작회사의 활동을 주주들에게 알린다.
 - 합작회사의 정보와 보고서의 정확성에 책임을 진다.
- 7.4 일반이사는 해외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합작회사를 대표하며 계약과 협정을 체결하고 재무 문서와 총회에서 쓰이는 회사명으로 중재 절차에 참여하다.
- 7.5 일반이사는 회사 상호 명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약서나 협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일

반 이사는 주주총회의 허가 없이 주주, 경영인, 혹은 다른 사업체의 높은 직위로 승급할 수 없다.

제8조 합작회사의 경제, 과세, 재무 및 감사활동

- 8.1 합작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1일, 혹은 1년째인 경우 설립일자로 부터 시작하며 만료 일자 는 매년 12월 31일로 하거나 계약의 만료, 종료 일자에 명시된 마지막 회계연도 혹은 조항에 따른 합작회사의 파산일자에 의거한다.
- 8.2 합작회사는 소득세와 관세를 내며 몽골의 법에 의거하여 토지 사용 임대료를 지불한다. 소득세 는 소득을 얻은 동일한 통화로 납부되어야 한다.
- 8.3 합작회사의 재정 및 통계 서적은 몽골의 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8.4 몽골의 법과 규정에 따른 국가의 예산에 맞춰 소득세 납부 후 합작회사는 의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고정된 한도 이내에 예비금 및 다른 자금을 설정해야 한다.
- 8.5 합작회사는 몽골의 법에 따라 감가상각 기금을 설정 하여야 한다.
- 8.6 합작회사는 몽골의 모든 은행에서 투그릭 계좌나 자유 교환성의 경화 계좌를 열 수 있다.
- 8.7 금융당국은 합작회사의 관련 세금 및 재무제표를 검사하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요구한다.
- 8.8 합작회사는 소득, 지출 명세서를 포함하여 분기별, 연별로 재무제표를 관련된 몽골의 세금 및 감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합작회사는 적절한 형태로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해외 투자 기구 및 대외 무역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8.9 감독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합작회사의 경영진 및 의회에 나설 수 없다.
- 8.10. 감독 위원회는 합작회사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일반이사와 대리이사는 감독위원회가 조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8.11 합작회사는 몽골어로 회사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를 월별, 분기별로 준비해야 한다.
- 8.12 합작회사의 부기는 몽골어로 한다. 은행 계좌를, 자본, 수입, 지출과 채무를 포함한 기타 자본과 현금은 투자 시에 몽골의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환율과 같은 환율로 기록되어야 한다.
- 8.13 구성원들은 합작회사에 이윤을 1년에 최소 2번 각각 그들이 기부한 비율에 한해 근로소득과 같은 환율로 분배받아야 한다. 합작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지 않는 이 상 이윤은 분배하지 않는다.

제9조 합작회사의 파산 및 종결

- 9.1 합작회사가 파산한 경우 의회는 파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9.2 합작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 의 결정에 따라 파산된다.
 - 합작회사의 원래 기간의 만료나 연장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거나 계속 일어날 경우 결정은 주주총회에 의해 만장일치 로 내려진다.
 - a. 회사가 심각한 손실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 b. 구성원이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조항에 나타난 기부를 실패 하였을 때
 - c. 구성원이 의무수행을 실패하거나 본 계약서의 경제적 목표에 해가 되는 임무 불이행으로 인 해 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때

- d. 합작회사 운영의 경영진이나 의회에 구성원이 참가하지 못 할 경우
- e. 상호결정에 의해서 회사가 파산한 경우
- f. 합작회사에서 외국협동회사의 모든 이권을 몽골의 협동회사가 전부 구입한 경우
- g. 동업법 11조 2.2항 과 회사의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등록이 삭제된 경우
- h. 승인이 필요한 생산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부여된 권한이 효력을 잃었을 때

9.3 몽골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작회사를 해산시킨다.

- 1) 파산
- 2) 이 법령 9조의 2(g) 와 2(h)의 상황에 비추어 효력이 부족하여 결의안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결의안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진행할 때
- 3) 합작회사의 모든 인원이 탈퇴하였을 때
- 4) 법의 일부 또는 심각한 위반
- 5) 법이 제공하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9.4 회사가 파산할 경우, 모든 채무를 지불 후 남아있는 재산은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합작회사의 등록 자본에 기여한 비율로 분배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은 회사의 모든 자산이나 재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측정해야한다. 회사의 재산은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어떠한 통화로도 현금전환이 가능하다.

9.5 합작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구성원들은 활동을 관계 당국의 허가에 따라 합작회사에서 계속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다른 합작회사의 구성원들에게 합의된 가격으로 이권을 산다. 만약 구성원들이 가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격 조정을 위하여 외국기업을 초청한다. 평가 후에, 구성원들은 각각의 규칙과 규정에 준수하여 회사의 자산 및 재산의 판매에 대하여 필수적인 승인을 받아야한다. 합작회사에서 다른 구성원의 이권을 합의하에 사는 구성원은 두 달 후 30일 이내에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9.6 의회는 합작회사의 파산 결의안을 채택하여야 하며 파산위원회를 조직한다.

9.7 파산 위원회는 합작회사의 남은 재산을 최종 결산 1개월 이내에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

9.8 분배완료 후 파산 위원회는 의회에게 승인을 얻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준거법

효력, 구현, 수정 및 무효 등 이러한 법령의 채택은 몽골의 법과 규정에 따라 조정 된다. 계약과 법령의 해석에 관련한 분쟁은 계약이 우선한다.

제 11조

법령은에서 200x 년도에 만들어졌다. 법령은 계약서에 승인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전의 협상, 거래처, 거래조약 및 기타정보를 대체한다.

당사 “A”: 타사 “B”:

4.7 100% 외국인 투자의 특허장 견본

“.....” 주식회사

일반조항

- 몽골의 민법, 외국인 투자법, 회사법, 세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몽골의 영토에 설립된 전액출자 회사를 채택한 시민

제1조 회사의 상호명과 등록 사무소

- 몽골어로 "....."이라 하며 영어로 "....." Co.Ltd 라한다. 그리고 등록 사무소는 울란바토르에 위치하여야 한다.
- 회사의 주소:

제2조 회사의 설립자

설립자:의 시민

주소 :

제3조 회사의 권한

- 회사는 국가세무부에 등록 신청을 한 기점으로 법인이 되며 유한책임을 진다. 법인상태를 나타내는 날짜는 설립일자이다.
- 회사는 회사명으로 몽골 및 외국 기업과 계약 및 협정을 맺을 수 있고 재산 및 비 재산권을 획득하고 의무를 지며 법정 및 중재기관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 회사는 등록 자본 한도 내에서 물질적 책임을 진다.
-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락 사무소를 몽골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세울 수 있다.
- 자사의 모든 활동에 "회사" 라는 영업 이름을 사용한다.
- 회사는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공식 표제와 함께 자사의 직인과 공문이 있어야 한다.

제4조 회사 활동

- 회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국내 및 해외 무역
- 회사의 제품은 국제 및 몽골의 해당 제품의 생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5조 등록자본

- 회사의 등록 자본은 \$ US로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 Cash USD

제6조 경영

- 일반 이사회가 이끄는 경영은 회사의 일반 활동을 수행한다.
- 일반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받은 권한과 계약서와 법령에 의거하여 역량에 따라 합작회사의 활동을 설정한다.
- 회사의 경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새로운 회사의 등록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허가를 받으며, 회사를 등록하고, 회사경영의 방향을 정한다.
 2. 수출입 허가서를 취득하고 무역과 서비스에 필요한 제품과 재료를 전달한다.
 3. 인재를 채용 및 교육시키고 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4. 대차 대조표와 자산 보고서를 제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서명하며 이사회에 회사의 활동을 보고한다.
- 일반이사는 몽골의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직영도 대표하며 계약과 협정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 중재절차에 참여하고 공식 문서를 서명한다.
- 일반이사는 회사명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이나 협정을 맺지 못하게 되어있다.

제7조 노동력

- 몽골의 노동법과 기타 법들에 의거하여 복지, 연금, 수당, 노동자 보호 등 회사는 개인 및 집단 노동계약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분쟁과 보수에 대한 결의와 기타 복지, 연금, 수당, 노동 보호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제8조 합작회사의 경제, 과세, 재무 및 감사활동

- 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1일, 혹은 첫 번째 연도인 경우 설립일자로 부터 시작하며 만료 일자는 매년 12월 31일로 하거나 계약의 만료, 종료 일자에 명시된 마지막 회계연도 혹은 조항에 따라 합작회사의 파산일자에 따른다.
- 회사는 소득세와 관세를 내며 몽골의 법에 따라서 토지 사용 임대료를 지불한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동일한 통화 기준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 회사의 재정 및 통계 자료는 몽골의 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몽골의 법과 규정에 따른 국가의 예산에 소득세를 납부 후 회사는 의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고 정된 한도 이내에 예비금 및 다른 자금을 설정해야 한다.
- 회사는 몽골의 법에 따라 감가상각 기금을 설정 하여야 한다.
- 회사는 몽골 및 해외의 모든 은행에서 투그릭 계좌나 자유 교환성의 경화 계좌를 열 수 있다.
- 금융당국은 회사의 관련 세금 및 관련 재무제표를 검사하고 필수한 서류와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사는 소득, 지출 명세서를 포함하여 분기별, 연별로 재무제표를 이에 관련된 몽골의 세금 및 감사 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합작회사는 적절한 형태로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해외 투자 기 구 및 대외 무역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는 몽골어로 회사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를 월별, 분기별로 준비한다.

- 회사의 부기는 몽골어로 한다. 은행 계좌를, 자본, 수입, 지출과 채무를 포함한 기타 자본과 현금 은 투자시에 몽골의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환율과 같은 환율 기준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9조 보험

- 몽골법에 따라 모든 종류의 보험을 몽골의 보험 회사로부터 들어야 한다.

제10조 회사의 해체 및 파산

- 회사가 파산한 경우 의회는 파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체된다.
 1. 합작회사 기간의 만료나 연장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경우 설립자로부터 결정이 내려진다.
- 회사가 심각한 손실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 구성원이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조항에 나타난 기부를 실패 하였을 때
- 구성원들이 의무수행을 실패하거나 본 계약서의 경제적 목표에 해가 되는 임무 불이행으로 인 해 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때
- 관할 당국의 결정으로 인하여
- 회사가 파산한 경우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갚은 후 회사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분배되어야 한 다. 회사의 재산은 설립자가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 환율에 의해 현금화 되어야 한다.
- 파산 위원회는 합작회사의 남은 재산을 최종 결산 1개월 이내에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
- 회사의 파산이 끝나면 파산 위원회는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1조 회사의 기간

- 회사는 설립일자로부터 10년간 운영되어야 한다.

제12조 언어

- 본 현장은어로 기록되었으며와 몽골어로 복사되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언어는.....이며 근무언어는 몽골어 이어야 한다.

제13조 준거법

- 이 현장의 구성, 효력, 구현, 수정 및 소멸은 몽골의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 몽골의 법에 따라서 회사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14조 기타 조항

- 본 계약서는 서명한 날짜로 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전의 협상, 거래처, 원본, 조서 및 다른 정보 들을 대체한다.

- 본 계약서는 울란바토르에서 서명되었다.
설립자

4.8 노사관계

몽골의 외국인 시민 및 대외 투자 회사의 몽골 국민에 관한 고용 및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입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노동법
- 외국인 시민의 법적 상태에 대한 법과 사회 보험 법
- 해외로부터 노동력 및 전문가 유입 및 국내에서 해외로의 노동력 파견
- 고용 지원 법
- 외국인 투자 법
- 사회 보험의 입법 행위에 대한 법

고용에 관련된 사항은 2개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1. 몽골의 외국인 시민 고용 관련 사항
2. 대외 투자 회사 및 몽골의 외국 대표 사무소의 몽골인 고용 관련 사항

4.8.1 비자 및 거주자 허가증

비자

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1. 외부관계 담당의 중앙 행정 기관
2. 외국시민 및 시민권 담당 사무소
3. 몽골의 재외 공관 및 해외 영사관

외부 관계 담당의 중앙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몽골의 명예 영사관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아래 국가의 시민들은 비자 없이 몽골을 방문할 수 있다.

- 미국
- 홍콩 /최대 14일 방문/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최대 14일 방문/
- 필리핀 /최대 21일 방문/

- 카자흐스탄
- 이스라엘
- 쿠바
- 아제르바이잔
- 투르크메니스탄
- 우크라이나
- 그루지아
- 벨로루시
- 키르기스스탄
- 중국

몽골의 비자는 13가지 종류가 있다.

비자의 종류는 외국인 시민이나 무국적자의 목적에 따라 라틴어 문자로 비자 전표에 표시되어야 한다. "D", "A", "OU", "T", "HM", "O", "B", "S", "J", "HG", "SH", "TS", "H"

“T”비자 유형은 다음에 한하여 적용된다.

- 외국인 투자자
- 합작회사의 지점, 주재원 사무소에서 일하는 상급임원

“B”비자 유형은 다음에 한하여 적용된다.

- 몽골에 사업상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시민이나 무국적자

“HG”비자 유형은 다음에 한하여 적용된다.

-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고용계약 하에 몽골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시민이나 무국적자

비자 목적

비자는 “입국”, “입출국”, “출국”, “출입국”, “통과” 의 명칭을 가지며 "단일", "복수", "복수입국" 의 목적을 가진다.

입국 /몽골에 90일 이상 체류할시 적합하다

입-출국 / 몽골에 90일 이내 체류할시 적합하다.

출국 / 사업이나 개인적 용무로 몽골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 거주자인 외국인 시민에 적용된다.

출입국 / 일시적으로 몽골에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장기사업 거주자나 120일 이하로 체류하는 영주권자, 이민자, 무국적자에 적용된다.

통과 / 몽골 영토를 통과하는 외국인 시민이나 무국적자에 적용된다.

몽골의 비자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된다.

1. 유효한 여권
2. 여권크기의 사진 1매

3. 지원서

4. 신임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보증인신원증명서, 또는 양자협정에 명시된 바는 다음과 같다.

- 공식 방문단 - 현지법인으로(국가, 정부, 비정부기구, 사업체) 부터의 초청장이나 주정부 및 지방 자체단체가 작성한 공식 요청
- 30일 이상 90일 이하로 머무는 관광객들 - 몽골의 외국인 사무소나 귀화 사무소로부터의 비자 허가
- 개인 손님 - 몽골 국립 개인 초대장, 몽골의 외국 및 귀화 사무소로부터의 승인, 비자 신청자가 몽골에서 거주를 위해 재정 증명과 관계된 서면
- 통과 여객 - 편도 승차권과 다음 목적지 국가에 대한 비자
- 사업 방문단 - 몽골 사업체의 초청장이나 법인으로 보내는 요청서 (이때 몽골이 양국협정을 맺은 나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몽골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사람은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한다.

30일 이상 체류한 방문객은 몽골 이민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된다.

- 중앙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요청서
- 수신 법인으로부터의 요청서
- 여권 사본
- 사업체 허가서의 사본
- 125000 투그릭 지불 영수증

비자연장

외교통상부는 외교 및 공식 비자를 연장해준다.

몽골의 이민 기관은 E 레벨 비자를 연장해 준다. 몽골의 임시거주자나 임시여행자에게 발급된 비자의 기간은 몽골의 이민국으로부터 30일 연장 받을 수 있다. 공식목적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

- 중앙 국가 행정 기관으로부터 받은 노동 허가증
- 외국 무역 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나 면허증
- 유효한 여권
- 첫 번째 입국 페이지가 나와 있는 여권 사본
- 작성된 신청서와 3*4 크기의 최근 사진

개인적인 용무 및 여행 용무의 외국인들은 비자 연장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비자연장 요청서
2. 유효한 여권

거주자 허가증

180일 이상 체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방문자들은 장기 거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비자 연장이 지연되면 수차례 외무부에 방문해야 하며 비자 만료 후 하루당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한 외국인 여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법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시민은 몽골의 관할 기관에서 비자를 획득함에 따라 몽골을 방문하거나 거주할 수 있다. 외국인 시민이 몽골의 외국인투자의 사업체 경영 및 외국 비정부 지사나 국제기구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훈련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계약에 따라 고용되고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공식적인 목적을 위한 장기 거주자" 로 간주된다.

공식적 목적의 장기거주 허가를 위해 신청자들은 아래와 같은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중앙 국가 행정 기관 으로부터 취득한 취업 허가증
2. 외국인 투자기관 이나 대외 무역 기구로부터 받은 E-카드 (외국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외국인 투자 사업체에서 일할 경우)
3. 노동, 복지, 서비스 담당국으로부터 발행받은 작업 허가증
4. 관리 부장급의 추천서
5.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허가 요청장
6. 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은 결혼증명서와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7. 유효한 여권 사본
8. 유효한 여권
9. 작성된 지원서
10. 30,000 투그릭
11. 3*4 사이즈의 최근 사진 1매

몽골 이민국의 주소

울란바토르, 수헤 바타르 지구, 칭기즈 11번가

전화 : 315323, 1882

팩스 : (976 - 11) 311532, (976 - 11) 321704 근무시간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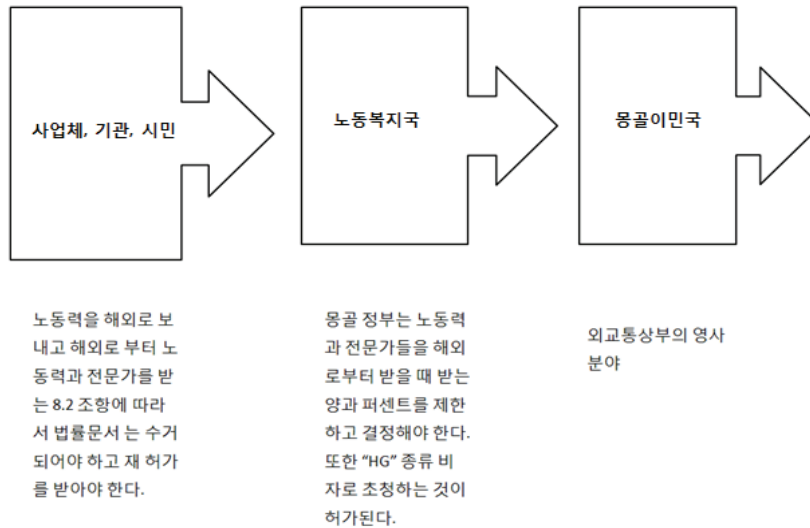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09:00~13:00	09:00~13:00	09:00~13:00	09:00~13:00	09:00~13:00
오후	14:00~17:00	14:00~17:00	내부 작업	14:00~17:00	14:00~17:00

해외에서 전문가와 노동력을 유입하기 위한 허가증

높은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교육과 산업, 새로운 생산과 서비스업, 장비조립 및 유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고급 기술 및 과학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업체, 기관, 또는 시민은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해외 노동력과 전문가를 유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노동력 및 전문가들을 받기 전에 관련 기관은 노동복지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2] 외국인 고용절차



관련 기관은 노동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해외로부터 노동력 및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문서, 작업이나 서비스 시행의 기간과 금액, 구체적인 산업, 위치, 직업, 직장경력과 외국인 시민의 능력을 자세히 열거한 공식문서
- 사업체 국가 등록 허가증의 공인 인증서 사본, 기관 및 외국인투자업체의 증명서
- 노동력과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
- 외국인 시민의 여권 사본
- 외국인 시민의 전문 자격증과 졸업증명서 사본
- 외국인 시민을 채용할 때 받은 기관 추천서
- 외국인과 외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에 관한 담당 당국의 의견
- 외국의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노동력과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에 따른 지방 고용기관의 의견
- 은행으로부터의 영수증 - 1인당 5,200 투그릭/ 국가 펀드, 계좌 번호 900017010

해외로부터 노동력과 전문가들을 받는 계약에 대한 일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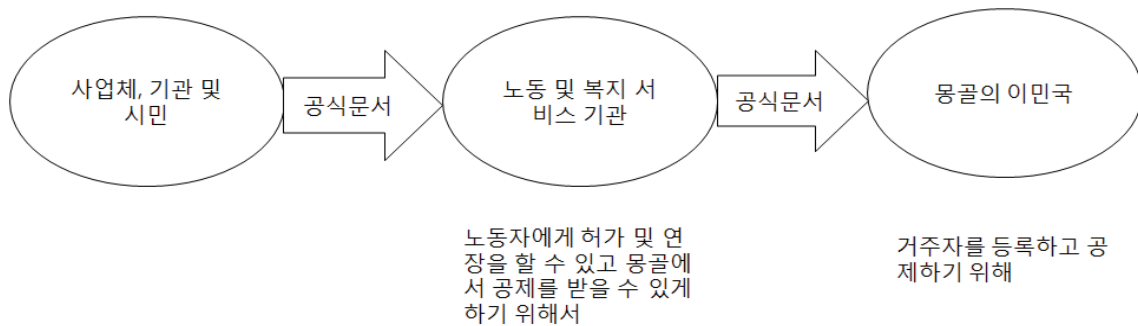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하는 전문직, 교육과 산업, 새로운 생산과 서비스업, 장비조립 및 유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고급 기술 및 과학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업체, 기관, 또는 시민이 이러한 직업을 위해 해외로부터 노동력과 전문가들을 유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해외로부터 노동력과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조항을 포함한다.

- 외국인 시민을 고용하는 기관명
- 외국인 시민의 직업 및 직장명과 외국인 시민이 채용되어야 할 인원수

- 외국인 시민들을 위한 건강 요구사항
- 전문적인 교육 수준을 증명하는 문서의 상호인정 조건
- 계약 기간 및 해지
- 보상 금액
- 산업 안전 위생, 노동 조건, 작업과 휴식 제도
- 숙박 및 유틸리티 사항
- 사회 보험 사항
- 노동 분쟁과 계약 실적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결의안의 방법과 형식

[그림 13] 몽골에 "HG"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시민들에게 노동 허가증을 주기 위한 절차



외국인 시민들에게 노동 허가증의 발급 및 연장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 법인의 요청, 직무수행, 서비스 결과, 채용의 이유
- 외국인 시민의 여권 (HG 도장이 찍힌 면)의 사본
- 접수은행 - 매달 1인당 138,000 투그릭(국가 펀드, 계좌번호 900091001)
- 3*4 크기의 최근 사진 1매
- 서비스 요금, 은행의 노동허가순서에 대한 지불, 1인당 12,200 투그릭 (국가 펀드, 계좌번호 900017010)
- 외국인 시민과 법인 문의에 대한 지원서 작성

정부기관은 관련된 문서를 수신하고 검토한 뒤 정부가 제한한 금액 이내에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한다. 노동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정부기관은 법인의 노동 허가증 연장, 직무수행, 서비스 결과 요청에 대해 검토하며 8.2, 8.3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연장하며 해외 법률에 의거하여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고 해외로부터 노동력과 전문가들을 유치한다.

외국인 시민을 초대한 법인은 몽골 이민국에 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장 수수료 및 그 금액(“해외 노동력 파견 및 해외로 부터 노동력과 전문가 유입” 법으로 부터의 직장 수수료 및 그 금액)

- 외국인 시민에게 직장을 제공하며 보수와 함께 직업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이 법의 9.2 조항에 제시된 금액에 따라 사업체, 기관 혹은 시민들은 직장 수수료를 내야 한다. (138,000 투그릭)

- 월간 직장 수수료는 외국인 시민 1명당 몽골 정부가 승인한 최소임금의 2배와 같아야 한다. (216,000 투그릭)
- 만약 광물자원 개발 면허증 보유자를 광물자원 법 43.1 조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표준 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고용한다면 해당 법률 43.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 정부는 직장 수수료 지불절차와 수수료 할인여부를 승인한다.

4.8.2 몽골의 외국인 투자회사와 외국인 대표 사무소에서의 몽골 시민의 고용

노동법의 목적은 노동자의 일반적인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정의하기 위함이며 단체 협약, 단체 교섭, 집단 및 개별 노동 분쟁, 노동 조건, 관리, 제어, 부채 법규의 위반을 정의하고 구성원들의 평등을 보장한다.

고용계약서

고용주나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관련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 계약서의 기간

고용 계약은 임시 계약이거나 무한 계약 중 하나이다. 고용 계약서에 당사가 특정 만료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고용인이 계속 일을 수행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 보장

노동 계약 하에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은 사회 및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그리고 특정 법률에 제시된 대로 매달 사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에 서명 후 사회 및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달 지불에 대한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임금

2008년 1월을 시작으로 최저 보수 금액은 642(투그릭)이 증가하였으며 월 108,000 (투그릭)이다. 급여는 최소 격월로 고정된 날짜에 지불 되어야 하며 급여는 시간당, 일당, 주당 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 직원은 가불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하루당 8시간 일하도록 되어있다. 연속 이틀 일하는 경우 휴식시간

은 최소 12시간이 되어야 한다.

유급 휴가

직원은 연차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연차 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이 주어진다.

기본 연차 휴가 이외에 직원은 정기적으로 일하는 조건 하에 부가적 휴가일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고용연차 6~10년 - 3 일
- 고용연차 11 - 15년 - 5 일
- 고용연차 16 - 20년 - 7 일
- 고용연차 21 - 25년 - 9 일
- 고용연차 26~31년 - 11 일
- 고용연차 32 년 이상 - 14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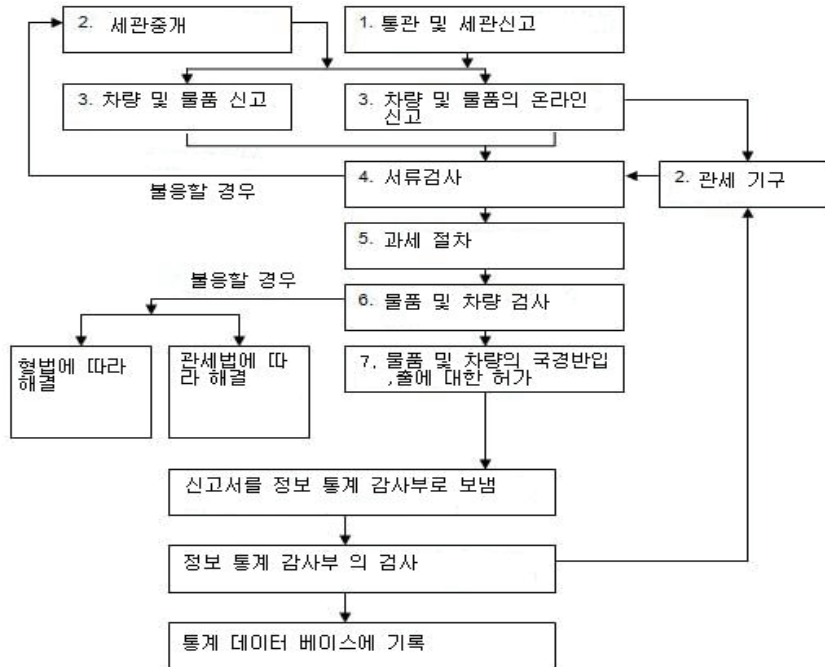
4.9 통관제도

통관절차

몽골의 관세법은 세관의 관세, 세율의 채택 및 수정, 세관 평가, 세관 의무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는 주요법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임시로 설립된 관세위원회는 관세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부에 제기한다.

세관 수속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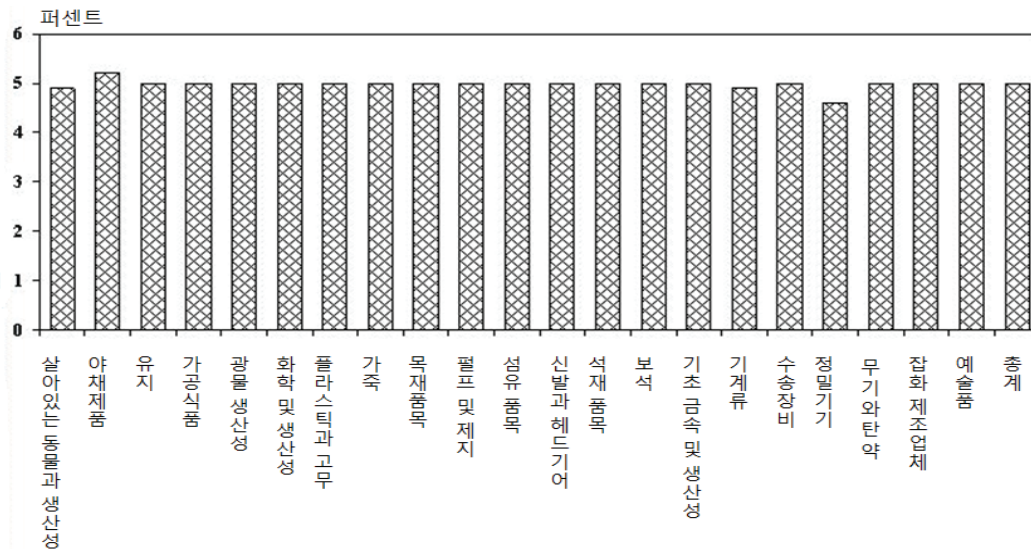
[그림 14] 세관수속 절차



관세 구조

몽골은 1993년 1월에 신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를 도입하였다. HS에 대한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몽골 분류표에 소개되어있다. 몽골은 HS2002를 2002년 1월에 채택했다. 현재 관세 제도는 8자리 HS 5541개로 이루어져있다. 첫 6자리는 HS의 일반 약호이며 마지막 두 자리는 국가 하위 단위다. 관세법에 따르면 몽골의 관세는 일반관세, 최혜국대우(MFN) 적용관세, 그리고 우대세율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15] 2004년 HS 코드별 최혜국 대우 적용 관세



출처 : 몽골 당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계 무역기구 사무국의 계산

법률상 최혜국 대우 적용관세는 몽골을 최혜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몽골에 관세 우선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의 상품에 우대세율을 부과한다. 이는 최혜국 적용세보다 2배 낮다.

1997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몽골은 수입물품의 대부분에 15%의 종가 관세를 적용하였다. 관세정률법의 도입 이후 관세율은 수차례 수정되었다. 주요 변화중 하나는 1997년 5월과 1999년 9월 사이 이루어진 모든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제도였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시행된 모든 수입품에 대한 7% 관세부과이다.

2가지의 다른 최혜국 적용 세율이 있다. 다시 말해 비관세율과 15%의 계절 관세율이 있다. 무관세율은 49 관세세목(전체세목의 0.9%)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번식 가능한 살아있는 동물들, 말, 소, 돼지, 양, 염소, 정보전달 기기 예비 부품, 정보 개발을 위한 다른 기계, 증폭 다이오드, 의료 기구가 있다. 2000년도부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 조약 및 협력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입된 장비와 물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석탄이나 에너지 프로젝트 혹은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를 위하여 수입된 중장비 기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15%의 계절 수입 관세율은 밀가루와 야채(감자, 양파, 양배추, 무, 순무, 노란 당근)와 같이 이러한 국내 제품들과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다.

세율은 8월1일부터 4월1일까지 관련 제품의 수확이 끝난 뒤 부과된다.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 기간엔 5%의 세율이 붙는다. 정부의 재량에 따라 관세는 몽골 관세법 제 4조, 6조에 의거하여 몽골 관세양허표에 따라서 세관 관세 위원회에 의해 최대 50%까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관세 평가, 사전 출하 검사 및 원산지 규칙

수입된 물품을 위한 세관의 평가는 관세법에 따라 시행 된다.

몽골은 관세평가에 c.i.f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법의 10-18 조에 따르면 평가를 결정하는 주원인은 거래가격이다. 다시 말해, 물품이 몽골의 세관 영토에 수출을 하기 위해 팔릴 때 지불되었거나 지불 될 수 있는 가격이다. 만약 세관이 신고가격이 맞지 않다고 의심하고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 가격의 정당성을 밝힐 수 없다면 세관은 "연역적 방법", "계산방법", "최악조건사용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몽골은 사전 출하 검사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몽골은 수입된 물품에 대해 어떠한 원산지 규칙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선 수입 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수입 금지, 제한, 그리고 허가

몽골은 어떠한 수입 할당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 금지 또는 제한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수입 금지된 물품으로는 마약과 마취약, 그리고 이들의 원료 및 생산 장비가 있다. 1961년 마약에 대한 유엔 협약, 1971년 물질에 대한 유엔 협약, 1998년 불법 무기와 마약, 수의사 장비, 거래에 대한 유엔 협약에 의거하여 수입 제한되는 물품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는 말, 소, 양, 염소, 낙타가 있다. 또한 희귀동물과 고기의 특정 부분, 천연 식물, 우라늄과 우라늄 농축액, 이온화 및 자외선 물질, 낮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화학 물질, 몬트리올 의정서에 제시되어있는 오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해로운 화학물질들, 위험한 산업 폐기물, 기증자의 혈액, 인간 정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학 약품들이 제한된다.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수입제한의 주목적은 인간,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국가 등록 사무소에 세금 등록과 경제 단체 등록은 수출을 위한 통관의 목적이 요구된다. 수출을 위한 통관 절차와 서류는 세관 법에 따라 규제된다. 통관을 위한 주요 문서는 세관 신고 양식이다. 세관은 수출업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 총관이 측정하는 수출 제품의 관세 값은 몽골 국경에서의 값과 같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원스톱 서비스는 주요 세관소에서 가능하며 “황금카드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되었다. 몽골 국립 상공회의소는 수출 원산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섬유 수출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행과 이에 관련한 법규는 몽골상공회의소로부터 1999년 2월에 시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과 몽골에서 유래한 섬유의 결정"에 의거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려면 수출입자는 계약서, 송장, 포장 목록, 그리고 몽골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지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몽골상공회의소는 증명서를 4일(영업일자 기준) 이내에 발급해주며 제출한 서류를 돌려준다. 몽고 상공회의소는 공장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출세 및 수수료 부과

몽골은 수출세를 여러 가지 물품에 적용시킨다. 수출세를 관리하는 주요 법안은 1996년 3월 29일에 승인된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수출세금 금액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이 세금이 물품의 국내 가격을 인하시켰고 국내 가공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수출 금지, 제한, 그리고 허가

마약과 마취제(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 및 장비)와 유독화학물질은 수출 금지되어있으며 날카죽과 캐시미어는 국내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금지되어 있다. 몽골은 모든 유엔관련 경제 제재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몽골의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총기류, 폭발물질을 제외한 수출허가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표. III.7) 몽골은 다른 나라와 자발적 수출 자유 규제를 맺지 않았으며 몽골은 수출과 관련하여 가격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표 7〉 수출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HS코드	종류	수출 / 수입
	사육 동물	수출
01011000	순종 말	
01019000	다른 종류의 말	
01021000	순종 소과 동물	
01029000	다른 종의 소과 동물	
01031000	순종 돼지	
01041000	양	
01042000	염소	

HS코드	종류	수출 / 수입
01069010	낙타	
	동물 연구 목적을 위해 다른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어진, 정액, 그리고 배양된 미생물	
	특별 희귀 동물 (동물법에 표기된 26가지 종류의 동물)	
	희귀 동물 (정부 지정)	
05079011	사슴뿔의 밑가지	
05079021	사슴 뿔	
05079029	야생 양과 야생 염소의 뿔	
05100011	사향노루	
05100012	사슴의 음경	
05111000	소의 정액	
05119910	동물 정액(소 제외)	
05119990	사육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의 정액	
26121000	우라늄 광석 및 농축	
	II. 유독 화학 약품 (1998년 환경부와 보건사회복지과로부터 83/A/160으로 공동표기된 96가지 화학약품)	수출과 수입
	III. 치료 목적과 예방 목적을 위한 사람의 혈액과 장기	수출과 수입
30011000	가루 여부에 상관없이 마른 땀샘 및 기타기관	
30012000	땀샘 및 다른 분비 기관 추출물	
30021000	생명공학 과정을 통해 얻은 여부에 상관없이 혈액청 및 혈액분획물, 수정된 면역 제품	
30023000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예방	
30029000	기타: 사람 혈액, 재배된 미생물	
	IV. 폭발물	수출과 수입
36010000	화약 가루	
36020000	화약 가루이외의 조제 폭발물	
36030000	안전 신관, 폭발신관, 격발기, 뇌관, 점화기, 전가신관	
3604	폭죽, 섬광 신호탄, 레인로켓, 연기 신호탄, 기타 신호 물품	
	V. 군사용 물품 및 이에 대한 예비 물품 및 총	수출과 수입

세금감면 및 수출 보조금

몽골은 농산물을 포함한 어떠한 수출물품에도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저작권 관련 권한

1993년 제정된 몽골의 저작권 법 제 3조에 따라서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및 저작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규정한다. 저자는 작품이 및 계약의 권리에 대한 양도권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저작권을 보호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몽골법은 예술가와 배우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보호 기간 포함) 그리고 방송 기관과 음반 제작사들의 권리도 보호한다.

특허

몽골 특허법에 의거 특허는 출원에 따라 20년 동안 보호받는다. 특허는 방법과 제품에 따라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 약학, 화학, 비료, 살충제, 제초제, 생물공학, 생물학적, 유전적 재료가 포함된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제출하며 특허 출원은 특허요구, 발명품에 대한 설명, 특허청구와 개요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특허출원을 요청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은 발명품의 특허 기준 적합여부를 특허법에 따라 검사한다. 특허청은 제출한 날짜로부터 9개월 내에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결과 모든 것이 충족되면 특허청의 결정에 의해 특허권이 부여 되는데 특허청의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권이 부여된다.

상표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법률(The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기존의 <상표명 및 상표권에 관한 법률(Law on Trade Names and Trademarks)>을 대체한 법률인데 새로운 법은 상표권, 서비스 상표, 단체 상표, 그리고 인증상표 등을 보호한다. 새로운 법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를 출원하며 상표권과 상품명을 등록하는 것이다. 상표는 양식을 제출함에 따라 10년 동안 등록이 되며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몽골어로 신청양식을 기입해야한다. 지원양식이 법의 제 6.1 조항을 만족한다면 상표 등록 날짜는 신청서 접수날짜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접수 후 특허청은 제출한 상표가 등록하기에 적절한지 검토한다. 특허청은 제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은 6개월 더 연장 될 수 있다. 상표가 수락되고 나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하고 국가 상표 등록소에 이를 등록한다.

지리적 표시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법(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제품의 생산지, 품질, 명성, 기타 특징 등 사항을 표시한다. 만약 국가나 지역의 지명이 특정 상품을 나타내기 위한 일반적인 지명이라면 법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지리적 표시는 몽골에 등록된 동일한 상품의 동일한 지리적 표시나 상표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신청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특허청에 제출한다. 특허청은 국가 지리적 표시 등록소에 수락한 지리적 표시를 기록하며 특허권을 부여하고 신청서를 보관한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도서자료는 출판된다.

병행 수입

병행 수입은 몽골에서 허용되지만 단독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4.10 세금 및 회계

법인 소득세

새기업 소득세에 따라 낮은 세율(lower tax rate)은 15%에서 10%로 낮아지고 높은 세율(higher rate)은 30%에서 25%로 낮아졌다. 이것은 높은 세율로부터 임계값을 1억투그릭에서 30억투그릭로 끌어올리며 99%의 기업 납세자들이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새기업 소득세는 사업체의 지출에 대한 공제를 합법적으로 허가한다. 또한 투자 세액 공제 및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차기 이월 손실금을 제공하며, 벤처기업 및 신생 사업체를 지원한다. 또한 대부분의 차별적인 세금 면제 및 공휴일을 제거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앤다.

개인소득세

새 개인 소득세는 기존에 존재하던 10%, 20%, 30%의 세 가지 개인 소득세를 전부 10%로 통일시켰다. 또한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금공제를 1년에 48,000투그릭에서 84,000투그릭로 증가시켰다. 국민의 30%인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급여가 없거나 낮은 서민들(저소득층의 1/3)의 세금은 면제시킨다. 납세자에 대한 관리 부담을 줄여주고, 자영업자에게 사업 지출비를 공제 해주며 부가혜택을 규정하고 그들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탈세의 기회를 줄인다.

부가가치세 (VAT)

새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부가가치세를 15%에서 10%로 낮췄으며 면제자수를 반으로 줄였으며 왜곡사항을 없앴다. 부가가치세는 해외로부터 들어온 기술, 장비, 원료, 부품에 대해 면제되며 디젤 및 가솔린 분야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가스연료, 해당 컨테이너, 특수 목적 장비, 기계 및 액세서리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물품의 항목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소비세

새소비세는 게임장비에 매달 세금을 부여하고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세금부과 방법을 바꾼다. 또한 공해를 증가시키는 차량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알코올 제품에 세금을 인상시킨다.

수입세

몽골은 수입관세율을 5% 고정비율로 적용한다. 순종 동물, 일부 정보 기술과 의학 및 수의학 장비 및 관련 예비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허용한다. 밀가루와 야채는 계절 관세가 적용된다.

수출세

몽골은 제한된 수출세를 캐시미어, 낙타털실, 염소가죽, 목재, 철과 알루미늄 폐기물과 같이 지정된 항목에 적용시킨다.

불로소득세

최근 몽골의 의회는 불로소득세법을 비준했다. 이 법의 목적은 특정 광물 가격의 인상과 특별 자금에 대한 세금 수수료를 견음으로 만들어진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다음과 같은 광물은 가격 인상에 대한 초과 이득세를 부과한다.

1. 금
2. 구리 광석

세금 지불인은 몽골 영토에서 채광하는 금과 구리 광석을 파는 개인, 혹은 법인이어야 한다.

금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액은 요금과 가격을 빼서 계산되어진 “기본 가격”(런던 금속교환으로부터 구리 가격의 백분율에 따라 계산되어진 가격과 광업 및 구리 광석의 생산 비용의 총액)에 의해 결정된다.

구리에 대한 이익 소득세의 값은 몽골은행에서의 금 1온스 값에서 \$500을 제외한 값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구리의 이익 소득세를 결정하게 되는 기본가격은 구리 1톤당 \$2600가 되어야한다. 이 법에서 금과 구리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68%로 정의한다.

세무에 대한 책임

세무신고는 1992년 재무부 아래 별도의 정부기관으로 세워진 국립 세무부가 주관한다. 국립 세무부는 21개의 아이막(aimag)에 사무소를 두고 이를 관할한다. 수도 사무소 및 다른 도시와 아이막(aimag)의 감독 아래에 9개의 지역 세무부가 있다. 현재 세금 제도는 세금, 수수료, 그리고 납부로 구성되어있다. 세금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부과된다. 세무행정은 19개의 주 세금과 4개의 지방세금을 담당하며 세관 총국이 수입 상품에 대한 수입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신청에 대해 책임과 수출 물품에 대한 수출세를 담당한다.

회계법

몽골 정부는 2001년 12월 회계법을 통과시켰으며 그 후 2002년, 2003년에 회계법이 수정되었다. 회계법에 따르면 몽골 회사의 회계제도는 국제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즉 회사는 특정한 회계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각 회사의 회계법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재 회계법의 목적은 회계 원리, 회계 경영, 회계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기록 유지 관리와 사업체 및 기관이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데에 있다. 사업체와 기관은 재무제표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대차 대조표
2. 손익 계산서
3. 자본 변동표
4. 현금 흐름표
5. 재무제표에 요구되는 부가적 공시사항
6. 사업체나 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 및 사항이나 감사의 의견과 경영 보고서는 감사된 재무제표와 함께 동봉되어야 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며 12월 31일에 끝난다. 사업체나 기관은 분기별 재무제표를 매달 20일에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으로 부서의 분기별, 연도별 재무를 다음연도의 매달 2월 10일에 제출한다. 사업체 및 기관은 분기별로 첫 달 25일에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다음해 분기별, 연도별 재무제표를 2월 25일에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국가 세무 기관에서 소득세의 결정은 국가 회계 기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법도 준수하여야 한다. 특정한 예시가 광물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광업 분야와 관련한 감가상각비의 조항에 관련된다. 그러나 과세 목적을 위해 국가 세무부는 넓은 회계 기준의 범위를 수용하여야 한다.

회계 감사

1997년 몽골 의회 국제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 법이 채택됐다. 이 법은 2006년 1월에 수정되었다. 감사에 대한 국제 표준의 지침은 최근 몽골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회사와 감사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당국은 국제 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국립 감사기준을 승인했다. 각 회사는 국제 감사기준에 의거하여 회사의 계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내역을 기입해야 하며 감사 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관련 모든 일을 대표한다.

1. 재무제표의 감사에 대한 법의 조항은 의무적이면서 강제적이다.
2. 사업체 및 각 기관의 대표들은 그들의 요구를 표현하고 감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3. 감사 외뢰인은 감사에 대한 결정을 수락하고 역할을 수행할 감사업체를 선정하며 계약을 체결한다.

특허 관련 사항

현재 새로운 특허법이 통과되어 시행중이다.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특허 및 허가증이 600에서 87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정부 기관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여 사업체의 특허취득 절차를 단순화 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부는 국가의 모든 감시 기관의 구조를 개편하고 몽골 장관 내각의 관할 아래 하나의 국가 전문 감사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세관, 건강, 수의, 그리고 국경의 품질상태 검사기관은 통관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했다. 조사 기관의 조사 중복 비용은 제거되었으며

단일 고정비용이 도입되었다.

4.11 통화 및 외환

투그릭(몽골어:төгөр)(기호: ₮; code: mnt) 은 몽골의 공식 통화이다.

투그릭의 지폐는 20,000, 10,000, 5000, 1000, 500, 100, 50, 20, 10, 5, 1 로 이루어져 있다. 환율은 변동적으로 2009년 6월30일자로 US\$1=MNT1435 였다. 실시간 최신 환율은 www.mongolbank.mn 에 공지되어있다.

신용, 직불 카드와 현금지급기

신용카드는 모든 은행과 큰 상점 및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지급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환전

주요은행 및 환전영업자에게서 환전이 가능하다. 가장 쉽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는 러시아 루블과 미국 달러이다.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는 널리 사용되며 미국 수표가 일반적이다.

은행 업무시간

은행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9:00~오후1:00 그리고 오후2:00~6:00이다.

송금

웨스턴 유니온과 머니그램 같은 송금제도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하다. 계좌이체는 대부분의 상업은행에서 가능하다.

통화 제한

외화 유출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4.12 토지

토지개혁

토지소유에 관련한 외국인들의 권한에 대하여 중요한 법적문서가 존재한다. 2002년과 2003년에

두 가지의 특별법이 몽골 의회로부터 승인되었다. 바로 토지법과 몽골 시민의 토지 소유권이다. 해외 국가, 국제기구,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 시민과 무국적자는 법에 따라 계약조건의 기간 및 특별한 목적에 따라 토지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민, 기업, 그리고 조직은 계약과 법에 준거하여 토지료를 지불한다. 토지료와 토지료 감면에 대해 부분적 규정, 토지료 면제, 토지료 수입 지출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목장을 제외한 토지, 정부 사용을 위한 특수한 토지 및 공공 토지는 몽골 시민에게만 소유권이 주어진다.

토지 소유권

몽골 시민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2003년 5월1일에 시행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에 수정됨)은 도시지역에 토지 민영화를 허용하며 이는 모든 몽골 시민에게 적용된다.

토지 사용 허가

몽골정부는 토지경매를 통해 외국인과 몽골에 영주하는 무국적자에게 토지를 출지 결정한다.

일정 기간 임대 토지 사용권 계약 아래 국가, 국제기구와 외국인 사업체 및 정부는 토지에 대해 경계를 정하고 사용 절차를 승인한다.

상호주의 원칙은 토지 크기설정과 외국 공관 및 영사관에 사용되는 토지를 위한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대외 경제 법인은 토지를 법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 조건, 약관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법과 정부는 적절한 기간과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 사용에 대한 요청과 계약 체결

토지 사용 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민:

- 이름, 영구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와 등록 번호
- 사용 요청한 토지의 크기, 경계, 위치, 그리고 면적의 넓이와 토지가 속한 행정 관할과 토지계획
- 토지사용의 목적과 기간

회사 및 기관:

- 회사 및 기관명, 회사가 속한 관할 구역, 주소와 위치, 국가등록허가서의 사본
- 회사가 토지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생산 및 서비스를 수행하려고 할 때 그 토지가 속한 행정 관할과 영토를 보여주는 토지계획
- 토지사용의 목적과 기간

토지의 입찰 혹은 경매에 대한 규정은 정부가 설정하여야 한다.

소움(soum)의 토지 관리인, 아이막(aimag)의 토지부서, 그리고 수도 및 지방은 시민과 맺은 토지 이용에 대한 계약에 근거하여 회사와 기관으로부터 허가서를 발급하고 국가 등록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산과 서비스업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획득한 시민, 회사, 그리고 기관은 사용권을 얻기 전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90일 동안 받아야 한다. 평가 후 토지사용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면 허가증이

부여되고 국가등록소에 등록된다.

만약 시민들의 토지사용을 위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서 회사 및 기관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았다면 토지이용 허가에 대한 요구는 거절되고 하며 입찰가격은 환불될 것이다.

등록국은 허가증 발급일자, 사용자의 이름, 토지단위의 번호, 면적과 위치를 공지해야한다.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한다.

- 주어진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정당성
- 토지 사용의 목적
- 토지의 크기, 위치, 경계가 표기된 지도
- 토지의 특성 및 질
- 토지 사용의 기간
- 토지료와 지불 조건
- 계약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 및 책임
- 토지를 건설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동의
- 토지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시 보상에 대한 조건 및 절차
- 토지 보호와 재건에 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토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토지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질과 특성이 제시된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토지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토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 토지를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환경을 고려하고 법에 의거하여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 토지료를 지불한다.
- 토지 사용에 관련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이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소유자가 건설 및 다른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 역시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과 동시에 소멸된다.

법과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 회사, 기관들은 그들의 토지 사용 권리나 소유권이 만료되었을 때 토지를 재건하며 토지 상태를 증진시킨다.

4.13 환경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몽골 토지법에 의거하여 광물자원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몽골 시민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국가 소유이어야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법의 종류에는 몽골 헌법, 환경보호법, 환경 평가법, 가정 및 산업 폐기물 법, 광물 법, 기타 관련법이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시민, 사업체, 기관, 외국인 시민, 법인은 광물 자원의 지불 및 관련 수수료에 대한 계약, 특허권에 의거하여 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는 몽골의 희귀동물을 사냥하는 것과 희귀식물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표준화 조직은 인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과 시민, 사업체가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사업체 및 단체의 법적 의무

사업체 및 단체는 환경 보호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환경 보호법, 정부의 결정,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주 사찰단 및 경비대의 규율을 준수한다.
2. 승인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환경 기준,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그들의 내부 조직을 감독한다.
3. 생산 또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동안 독성 물질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폐기물을 기록하고 유독성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4.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 및 단체는 자원을 보호하고 악영향을 줄이는 데에 쓰이는 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예산에 포함시킨다.
5. 계약에 의거하여 토지 유지, 및 식물을 배양하고 나무를 심으며 수질을 개선시키며 소음(Soum)과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6. 국가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생태학적 여건을 유지한다.

환경 영향 평가

기존의 산업과 서비스의 건설 및 활동을 늘리고 개혁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심사에 반영된다. 심사는 채광,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전에 종료된다. 사업자는 사업 계획서 및 경제적, 과학적 용이성과 관련 서류를 국가 중앙 행정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행정기관은 관련 서류가 법적 및 환경적으로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대한 심사를 12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야 한다.

1. 사업은 상세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다.
2. 사업은 특정 조건에 따라 시행 될 수 있다.
3. 상세한 환경 영향 평가가 요구 된다.

4. 법률에 어긋나거나 기술이나 장비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토지 관리 계획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세밀한 환경 영향 평가와 사업 활동의 감시 및 진행 절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은 환경 보호 계획과 환경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환경 보호 계획은 환경 영향 평가 기간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제거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의 예산 및 시간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

폐기물

개인과 사업체 및 단체의 공통적 책임

1. 해로운 폐기물을 생산하는 국가 및 지방 행정 기관에 대한 보고서
2.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없다.
3. 폐기물 기준에 대한 적절한 법과 절차를 준수한다.
4. 폐기물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보건 담당 정부 관계자는 유해 폐기물을 구분하며 보건과 환경에 폐기물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광물법

탐사와 채광 면허증 소유자는 환경법과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탐사권 소유자는 환경 보호 계획을 30일 이내에 환경 조사기관과 탐사하는 지역의 관할 지배 기관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 환경 보호 계획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미래 공적사용을 위함이라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탐사권 소유자는 탐사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연간 환경 보호 계획에 기록하며 이 보고서를 환경보호기관 및 해당 지방 정부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 새로운 대책을 위해 환경보호와 새로운 탐사 기계 및 기술에 관련된 환경보호 계획 수정안을 제안한다.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모든 수정안은 해당 지역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공식적으로 국가 및 지방 행정 기관에게 탐사지역 출입기회와 환경 보호법 구현 및 탐사활동을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 환경 보호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탐사권 소유자는 해당 지역 관리인이 만든 특수계좌에 특정연도 환경 보호 예산의 50%를 맡겨야 한다.

채광권 소유자는 환경 보호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환경 영향 평가 대비 환경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 영향 평가는 공공의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채광작업으로 부터 가능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최소화하며 피하는 방안을 포함시킨다.
- 환경 보호 계획은 채광작업이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행되는 것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 계획은 채광 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공기, 물, 인간, 동물 그리고 식

물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 보호 계획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독성 물질 및 잠재적 독성 물질의 저장 및 제어
- 지하수와 지표수의 보존 및 보호
- 댐의 건설과 광산 지역 안정성 확보
- 간척 대책

기타 대책은 특정한 채광 작업에 적절할 것이다.

- 환경 영향 평가와 환경 보호 계획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 중앙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 채광권 소유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채광 활동을 기록하며 환경을 담당하는 국가 중앙 행정 기관, 해당 지역의 관리인에게 환경 보호 계획 실행에 대한 연간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 환경에 대해 채광작업의 확장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에 의해 환경 영향 평가의 개정안과 환경 보호 계획을 제안한다.
- 환경 보호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탐사권 소유자는 해당 지역 관리인이 만든 특수계좌에 특정연도 환경 보호 예산의 50%를 맡겨야 한다.
- 면허권 보유자는 공공 및 개인 주택 주거, 우물, 기타 구조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표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채광작업으로 부터 어떠한 피해라도 입었을 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광산 폐쇄에 대한 요구사항

광산 면허권 소유자는 광산 폐쇄 전에 전문 조사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조치를 취한다. 면허 소유자는 최소한 폐쇄 1년 전 전문 조사 기관에 광산공식문서로 광산의 일부 또는 전체가 폐쇄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통보한다.

- 환경보호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광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세운다.
- 채광이 공용 사용을 위해 위험하다면 예방 조치를 취한다.

지방 행정 기구 및 다른 전문 조사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광산 지역으로부터 모든 기계 장비와 다른 물건을 제거한다.

- 채광권 소유자는 채광산업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표기되어야 할 위험지역 경고 표시가 적절한 크기로 삽입된 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 조사기관이나 중앙정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4.14 분쟁 해결

몽골에는 두 가지의 분쟁 해결 기구가 있다.

1. 법원
2. 연방 중재기구

1995년 대외무역중재법이 채택됐다. 몽골의 주 법원은 중재 재판소가 요청할 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급판정을 피하기 위한근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몽골 중재 센터는 1960년 2월에 몽골 상공 회의소에 의해 설립되었다. 몽골 중재 센터는 중재인과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몽골 중재 센터는 적용 절차의 합의 및 중재에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몽골 국립 중재 센터의 중재 절차는 기밀사항이다. 중재 판정부의 판결 전의 절차는 자유롭게 결정 될 수 있다.

몽골은 국제 중재를 선호하는 국가다.

1. 잠재적인 중재인
2. 발달된 법적 제도
3. 개방적인 마인드
4. 몽골에 중재를 위해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인지

중재법에 의거하여 몽골 상공 회의소의 대외 무역 중재 재판소는 몽골의 단일 기관 중재를 인정한다. 2003년 9월 국제 상사 중재 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의 새로운 중재법이 채택됐다.

새로운 법은 국제 중재 실무자들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새로운 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법은 국제적으로 수용된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이 법은 중재 장소가 몽골일 때 적용된다. 국내 및 국제중재의 차이점은 이 법에는 나타나있지 않다.
2. 계약 및 비계약상의 분쟁은 구성원들이 동의하거나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은 국제 상업중재에 얽매이지 않으며 상업분쟁에 특별한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3. 법에 따라서 구성원들은 영구적 혹은 특별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 특별 중재에서 당사가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법원이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기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중재는 다음과 같은 협약을 따른다.

국제 협약

외국 중재 판정의 인식 및 집행에 대한 1958년 뉴욕 협약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1965년 워싱턴 협약
기술 협력 부문에서 과학과 경제학에 관련되어 도래된 민법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1972년 모
스코바 협약

대외무역에 대한 몽골과 중국의 일반 배달 조건

조직

국가법

- 2003년 중재에 대한 법
- 2002년 민법
- 2002년 민사 절차
- 2002년 시행에 대한 법

몽골 국립 중재 센터(MNAC)

몽골 국립 중재 센터는 개인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이다. 1960년 7월2일, 몽골 국립 상
공 회의소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다.

1995년 대외 무역 중재 재판소에 법률은 몽골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외 무
역 중재 재판소는 몽골의 단일 기관 중재를 인정한다.

2003년 5월 9일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이, 의회에 의해 채택됐다.

몽골 국립 중재 센터는 21개의 지점 중재 센터가 있다. 몽골 국립 중재 센터는 회장, 사무총장, 중
재자 및 직원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

- 중재 : 중재는 몽골 국립 중재 센터의 주요 기능이다. 몽골 국립 중재 센터는 2003년 6월 16일에
몽골의 중재 법률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였다. 몽골 국립 중재 센터는 상업 중재방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 주문 분쟁을 예방하고 중재에 관한 법률 상담 제공
- 중재 및 조정에 대한 연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과정과 세미나를 조직
- 중재 및 조정을 촉진
- 중재 기관은 전 세계와 협력
- 법률 상담 : 몽골 국립 중재 센터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연구 및 조사
- 교육
- 출판 및 정보 유통
- 국제협력 : 몽골 국립 중재 센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기관이며 국제상사중재기구연맹
(IFCAI), 차터드 연구소,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여러 국제 중재 기관의 구성원이다. 몽골
국립 중재 센터는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 참여 하고 있다. 몽골

국립 중재 센터 사이의 연례 삼변형 회의를 시작,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과 부정부패 방지위원회(ICAC), 러시아 상공 회의소에서, 그리고 2000년 몽골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합작 계약

- 상공 회의소 러시아의 국제 상업 중재 재판소
- 중국 국제 무역 중재위원회 경제
- 중화민국의 상업 중재 협회
- 쿠알라룸푸르 중재에 대한 지역 센터
- 태국 중재 연구소
- 중재자의 차터드 연구소
- 홍콩 국제 중재 센터 홍콩
- 한국 상업 중재위원회
- 상공 회의소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제 상업 중재 재판소
- 체코 상공 회의소 안에 있는 국제 상업 중재 재판소

중재 규칙의 조정은 몽골 국립 중재센터 관리 하에 조정된다.

부 록

몽골 대사관

1	알마티	Посольства Монгол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050043, г. Алматы, ул. Мусаб аева, д.1	전화: 7-7272-551278 팩스: 7-7272-581727 이메일: info@mongemb.kz
2	앙카라	Mogolistan Buyukelciligi (Embassy of Mongolia) Koza sokak No.113 G.O.P.ANKARA 06700 Turkey	전화: 90-312-4467977 팩스: 90-312-4467791 이메일: mogolelc@tinet.net.tr 웹사이트: http://web.mogolembassyturk.com
3	방콕	Embassy of Mongolia 100/3 Soi Ekkamai 22, Sukhumvit 63 Road, Prakanong Nua, Wattana, Bangkok 10110	전화: 00 66 2-381-1400 팩스: 00 66 2-392-4199 이메일: mongemb@loxinfo.co.th
4	베를린	Botschaft der Mongolei Dietzgen-Str.31, 13156 Berlin BR Deutschland	전화: 49-30-474806-0 팩스: 49-30-474806-16, 이메일: 520025070730-0001@t-online.de mongolbot@aol.com 웹사이트: http://www.botschaft-mongolei.de
5	브뤼셀	Ambassade de Mongolie Avenue Besme 18, 1190, Forest Bruxelles Belgique	전화: 32-2-344-6974 팩스: 32-2-344-3215 이메일: brussels.mn.embassy@chello.be
6	부다페스트	Hungary 1022 Budapest, Bogar Utca 14/c, Hungary Mongol Nagykovetseg	전화: 36-1-2124579, 36-1-3268558 팩스: 36-1-2125731 이메일: mongolemb@t-online.hu
7	베이징	Embassy of Mongolia No 2, Xiu Shui Bei Jie, Jian Guo Men Wai, Beijing, China, 100600	전화: 86-10-6532-6512 팩스: 86-10-6532-5045 이메일: mail@mongolembassychina.org http://www.mongolembassychina.org
8	바르샤바	Ambasada Mongolii 02516 Warszawa, Polska ul. Rejtana 15 m. 16	전화: 48-22-849-9391 팩스: 48-22-848 2063 이메일: mongamb@ikp.atm.com.pl
9	워싱턴	Embassy of Mongolia 2833 M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USA	전화: 1-202-333-7117 팩스: 1-202-298-9227 팩스: 301-299-7712 이메일: esyam@mongolianembassy.us 웹사이트: http://www.mongolianembassy.us
10	베나	Botschaft der Mongolei Teinfaltstrasse 3/6 1010 Vienna Austria	전화: 43-1-5352807-0 팩스: 43-1-5352807-20 이메일: office@embassymon.at enkhtaivan@embassymon.at 웹사이트: http://www.embassymon.at
11	비엀짚	Embassy of Mongolia Q.Wat Nak Km.3 P.O. Box 370 Vientiane Lao P.D.R	전화: 856-21-315220 팩스: 856-21-315221 이메일: embmong@laotel.com embmonglao@gmail.com

12	가바나	Embajada de Mongolia Calle 66 No.505, esquina a 5ta. A, Miramar, La Habana, Cuba	전화: 53-7-2042763 팩스: 53-7-2040639 이메일: embahavana@ceniai.inf.cu
13	델리	Embassy of Mongolia 34, Archbishop Macarios Marg, New Delhi 110003	전화: 91-11-24631728, 24617989 팩스: 91-11-24633240 이메일: mongemb@bol.net.in, mongemb@vsnl.net 웹사이트: http://www.mongemb.com
14	르케어	Embassy of Mongolia No.14, str 152, MAADI, Cairo Egypt	전화/Fax: 00-202-23586012 전화/Fax: 00-202-23591670 이메일: monemby@link.net
15	런던	Embassy of Mongolia 7-8 Kensington Court, London, W8 5DL United Kingdom	전화: (44) 207-937-0150 팩스: (44) 207-937-1117 이메일: office@embassyofmongolia.co.uk 웹사이트: http://www.embassyofmongolia.co.uk
16	모스크바	Россия г.Москва 121069 Борисоглебский пер.-11 Посольство Монголии	전화: 7-495-290-67-92 팩스: 7-495-291-46-36 이메일: mongolia@online.ru
17	오타와	Embassy of Mongolia 151 Slater Street, Suite 503 Ottawa, Canada ON K1P 5H3	전화: 1-613-569-3830 1-613-569-2623 팩스: 1-613-569-3916 이메일: mail@mongolembassy.org consul@mongolembassy.org 웹사이트: http://www.mongolembassy.org
18	파리	Ambassade de Mongolie 5, Avenue Robert Schuman 92100 Boulogne -Billancourt FRANCE	전화: 33-1-46 05 28 12, 팩스: 33-1-46 05 30 16 이메일: info@ambassademongolie.fr 웹사이트: http://www.ambassademongolie.fr
19	평양	Embassy of Mongolia Daehak-guri 17, Munsu-dong Taedongang -ko Pyongyang DPRK	전화: 850-2-381-7321, 850-2-382-7323, 850-2-382-7322 전화/팩스: 850-2-381-7616 이메일: mon-emb@kcckp.net
20	프라하	Velvyslanectvi Mongolska Na Mame 5, Praha 6, 160 00 Ceska Republika	전화: 420 224311198 420 224325760 420 233326976 팩스: 420 224314827 이메일: monemb@bohem-net.cz 웹사이트: http://www.mongolembassy.net
21	소피아	България София 1113 Ул.Фредерик Жолио Кюри-52 Посолство на Монголия	전화: 359-2-8659012 팩스: 359-2-9630745 이메일: mongemb@gmail.com

22	서울	Embassy of Mongolia 33-5 Hannam-dong, Yongsan-gu, Seoul 140-210, Republic of Korea	전화: 82-2-794-1350 (consular section) 82-2-794-1951(consular section) 82-2-798-3464 팩스:82-2-794-7605 팩스:82-2-798-3465 (consular section) 이메일:mongol5@kornet.net 웹사이트:http://www.mongolembassy.com
23	도쿄	Embassy of Mongolia 21-4 Kamiyama-Cho, Shibuya- Ku Tokyo 150-0047	전화: 81-33-469-2088 팩스:81-33-469-2216 이메일:embmong@gol.com 웹사이트: http:// www.mngemb.info
24	하노이	Embassy of Mongolia Villa No 6, Van Phuc Diplomatic Quarter, Hanoi, Vietnam	전화: 84-4-8453009 팩스:84-4-8454954 이메일:mongembhanoi@vnn.vn 웹사이트: http://www.mongembhanoi.org

사절단

Mission permanente de la Mongolie 4 Chemin des Mollies 1293 Bellevue Geneve Suisse	Tel: 41-22-7741974 Fax:41-22-7743201 E-mail:mongolie@bluewin.ch
Permanent Mission of Mongolia to the United Nations 6 East 77 th Street New York, N.Y.10075-1704 USA	Tel: 1-212-8619460 1-212-4726517 1-212-7373874 Fax:1-212-8619464 E-mail:mongolianmission@nyc.rr.com E-mail:mongolia@un.int Web: http://www.un.int/mongolia

영사관

1	호우호트	Zhongguo Huhe Haote Xinchenqu Wulanxiaoqu 5 hao Lou Menguguo Zhonglinshiguan	Tel:86-471-4303254, 86-471-4303266 86-471-4923819 Fax:86-471-4303250 E-mail:monconhh@gmail.com
2	에린	Zhongguo Erlian haoteWeijian binguan er lou	Tel: 86-479-7539200 Fax:86-479-7539200 Fax:86-479-7539202 E-mail: elkd39200@public.hh.nm.cn
3	울란우데	670000 г.У л а н - У д э У л.Профсоюзная-6 Г ен.Консульство Мо н г о л и и	Tel: 7-301-2-215275 (К о н с у л) 7-301-2-220499 (б а й н г а) Fax:7-301-2-215275 E-mail:mnc_03@mail.ru

4	이루크츠크	Россия 664003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Монголии Г.Иркутск ул.Лапина 11	Tel: 7-3952-342447 /консул / 7-3952-342145 / дэд консул/ 7-3952-342445 /атташе/ 7-3952-342295 /техник ажилтан/ Fax:7-3952-342143 E-mail:irconsul@angara.ru Website: http://www.inetmng.com
5	키질	Россия 667000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Монголии г.Кызыл Ул.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ая -	Tel: 7-39422-10445 tel/fax 7-39422-10430 Fax:7-39422-10445 tel/fax E-mail: mongolconsul@tuva.ru
6	우크라이나	Kiev-037 8/4,Gelyabova st. Room 613	Tel: 44-2091071 Fax:44-4596526 e-mail: consulmo@gu.kiev.ua
7	싱가포르	Consulate General of Mongolia 600 North Bridge Road. #24-08 Parkview Square Singapore188778.	Tel: 65-63480745 Fax:65-63481753 E-mail: consulmn@singnet.com.sg
8	벨로루시 브레스트	224024, Республика Беларусь. г.Брест. Перв Фортечный 12	Тел/Факс: 375-162-455548 Эмэйл: boldbaatar@mail.ru

몽골과 “상호 보호 및 투자 추진 조약” 을 체결한 국가들

번호	국가	가입일	효력 발생일
1	대한민국	1991.03.28	
2	독일	1991.06.26	
3	중국	1991.08.26	1993.01.11
4	영국	1991.10.04	1991.10.04
5	프랑스	1991.11.08	1993.12.22
6	벨기에	1992.03.03	2000.03.15
7	우크라이나	1992.11.05	1992.11.05
8	이탈리아	1993.01.15	1995.08.11
9	카자흐스탄	1994.02.12	1995.03.22
10	라오스	1994.03.03	1994.12.29
11	헝가리	1994.09.13	1995.08.29
12	미국	1994.10.06	1997.04.01
13	네덜란드	1995.03.09	1996.01.20
14	덴마크	1995.03.13	1995.08.11
15	싱가포르	1995.07.24	1995.12.14

번호	국가	가입일	효력 발생일
16	말레이시아	1995.07.27	1996.01.14
17	루마니아	1995.11.06	1996.08.15
18	폴란드	1995.11.08	1996.02.05
19	러시아	1995.11.29	
20	스위스	1997.01.29	
21	인도네시아	1997.03.04	1998.10.30
22	체코	1998.02.13	1999.07.05
23	쿠웨이트	1998.03.15	2000.05.01
24	터키	1998.03.16	2000.02.25
25	쿠바	1999.03.26	2001.11.01
26	키르기스스탄	1999.12.04	2002.04.29
27	베트남	2000.04.17	2001.12.13
28	불가리아	2000.06.29	
29	필리핀	2000.09.01	2001.11.01
30	인도	2001.01.03	2002.04.29
31	일본	2001.02.15	
32	아랍 에미리트	2001.02.21	2004.03.19
33	오스트리아	2001.05.19	
34	벨라루스	2001.05.28	2001.12.01
35	리투아니아	2003.06.27	
36	스웨덴	2003.10.20	2004.03.19
37	북한	2003.11.19	
38	이스라엘	2003.11.25	
39	이집트	2004.04.27	
40	크로아티아		
41	카타르		

호텔 및 숙박

몽골에서 고급호텔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울란바토르, 버얀골, 에텔바이스, 투신, 푸마 임페리얼, 칸 팔라스, 캠펜스키, 칭기즈칸 호텔에 머무를 것을 추천한다. 음식을 포함한 하루 숙박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다.

1인실		US \$ 60 - 105
2인실		US \$ 85 - 130
스위트룸	1인실	US \$ 120 - 170
	2인실	US \$ 160 - 220

주택과 아파트

아파트의 민영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주택 문제가 감소되고 있다. 외국인도 도시의 어떤 곳에서라도 모든 시설이 완비된 아파트를 빌릴 수 있다. 아파트 월평균 임대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표준	국제 표준
방 1개 아파트	US \$ 250-350	US \$ 400-500
방 2개 아파트	US \$ 350-450	US \$ 500-800
방 3개 아파트		US \$ 1000-1,500

전기 및 통신 요금은 별도로 사용량에 따라 청구된다.

교육

몽골은 97%의 문맹퇴치율을 자랑한다. 1970년도 중반에 몽골은 유네스코로부터 국민교육에 대한 노력으로 황금메달을 수상했다. 50만 이상의 학생들이 660개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14만 학생들이 198개의 주립 및 사립 대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1. 울란바토르 국제학교는 사립이며 남녀공학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국적 학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사장 : Deidre Fischer

울란바토르 국제학교

P.O. Box 49/564

Bayanzurkh District 5

Ulaanbaatar 49, Mongolia

전화: 976-70-160-010/20

팩스: 976-70-160-012

이메일: int.school.ub@gmail.com

홈페이지: www.isumongolia.edu.mn

2. 울란바토르 엘리트 학교 - 이 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머무는 소규모 학교이다. 가족적인 분위기며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다.

UC 15, 8 th Khoro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전화: 976-11-462606

전화: 976-11-462607

3. 몽골의 러시아 연방 대사관 학교는 1992년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몽골의 유일한 러시아 학교이다. 교육부와 러시아 과학부가 인가하였으며 2003년에 국가로부터 인증 받았다. 이 학교의 설

립자는 러시아 외무부이다. 그러나 학교는 러시아 대사관이나 러시아 서민들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몽골 자녀들 역시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현재 7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540명이 몽골 학생이고 교사는 46명이다.

치안

몽골은 안전한 나라이며 몽골인들은 친절하고 조용하다. 몽골에는 심각한 테러, 납치, 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다. 몽골에서 치안이 불안정한곳은 없다. 울란바토르에서는 2003년 3월 이후 외국인 거주지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지정했다. 몽골은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치안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

투자 및 사업에 관련된 법

번호	법의 명칭	통과 날짜	마지막 개정날짜
1	회계법	2001.12.13	2002.07.10
2	광고법	2002.05.30	2005.11.17
3	부패방지법	2006.07.06	
4	중재법	2003.05.09	
5	감사법	1997.05.01	2006.01.12
6	은행법	1996.09.03	2006.06.22
7	파산법	1997.11.20	2002.07.04
8	중앙은행법	1993.09.03	2005.11.17
9	상공회의법	1995.10.24	2002.07.04
10	민법	2002.01.10	2005.07.07
11	회사법	1999.07.02	2005.11.17
12	헌법	1992.01.13	2000.12.14
13	소비자권리보호법	2003.12.26	
14	협동조합법	1998.01.08	2005.11.17
15	저작권법	2006.01.19	
16	환율정산규정 법	1994.05.12	2001.11.30
17	세관법	1996.05.16	2008.05.20
18	세관관세 및 의무 법	1996.05.20	2008.05.20
19	은행: 예금 및 거래법	1995.10.31	2005.07.07
20	가정용 및 산업용 폐기물법	2003.11.28	
21	에너지 법	2001.02.01	2002.07.04
22	환경영향평가 법	1998.01.22	2006.05.25
23	환경보호법	1995.03.30	2006.06.29
24	금융 규제 위원회 법	2005.11.17	2006.07.08
25	화재안전법	1999.05.28	2003.06.20
26	대외원조법	2003.06.12	
27	외국인투자법	1993.05.10	2002.01.03

번호	법의 명의	통과 날짜	마지막 개정날짜
28	자유무역지대 법: 타상가르	2003.12.18	
29	자유무역지대 법: 알탄블라그	2002.06.28	
30	자유무역지대 법: 자민우드	2003.06.20	
31	자유지대법	2002.06.28	2003.01.02
32	보험법	2004.04.30	2004.12.30
33	노동법	1999.05.14	2006.01.12
34	해외 인력 파견 및 해외 인력 과 전문가 수용 법	2001.04.12	2006.07.08
35	토지법	2002.06.07	2005.07.01
36	토지수수료법	1997.04.24	2005.07.01
37	면허법	2001.02.01	2006.07.08
38	광물법	2006.07.08	
39	자금세탁법	2006.07.08	
40	비저당폐쇄법	2005.07.07	
41	비은행금융활동법	2002.12.12	2006.06.22
42	비정부기구법	1997.01.31	2003.05.23
43	파트너쉽법	1995.05.11	1999.07.16
44	특허법	2006.01.19	
45	조달법	2005.12.01	
46	보험중개법	2004.04.30	
47	보호구역법	1994.11.15	2004.04.22
48	위생법	1998.05.07	2001.11.30
49	증권시장법	2002.12.12	2005.11.17
50	사회보험법	1994.05.31	2004.05.13
51	법인의 국가등록법	2003.05.23	2005.01.28
52	외국인 시민의 직위 법	1993.12.24	2004.05.13
53	하층토법	1988.11.29	1995.04.17
54	법인세법	2006.06.29	
55	소비세법	2006.06.29	
56	부동산세법	2000.11.17	2003.01.02
57	개인소득세법	2006.06.16	
58	추계세법	2001.11.16	2002.11.7
59	부가가치세법	2006.06.29	
60	특별이과세	2006.05.12	
61	기술이전법	1998.05.07	
62	관광법	2000.05.05	2006.06.29
63	유해 화학물질법	2006.05.25	
64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2003.05.02	
65	불공정 경쟁법	2000.05.12	2005.01.27

투자 관련기관 목록

1	몽골 외교 통상부	주소: Peace Ave, 7a Sukhbaatar Dist, Ulaanbaatar Mongolia 210648 전화: (976-11)-262788 팩스: (976-11) 322127 홈페이지: www.mfat.gov.mn
2	몽골 대외무역 투자기관	우편주소: FIFTA, Sambuu Street - 11, Ulaanbaatar - 211238, Mongolia 회사주소: Suites 801 - 810 and 1202, Government Building - 11, Sambuu Street - 11, Ulaanbaatar, Mongolia 전화: (+976-11)-326040, (+976-11)-320871 팩스: (+976-11)-324076 홈페이지: www.investmongolia.com 이메일: fifta@investmongolia.com
3	몽골 외국인 및 국적관리사무소	주소: Sukhbaatar Dist, Chinggis Ave - 11, Ulaanbaatar, Mongolia 11. 홈페이지: www.mngimmigration.mn 전화: (+976-11)-315323; (+976-11)-1882 팩스: (976-11)311532, (976-11)321704
4	몽골 관세청	홈페이지: www.mta.mn
5	몽골 해관총서	주소: Sukhbaatar Dist. “И х т о й р у у - 81/1” Ulaanbaatar Mongolia - 210620 홈페이지: www.ecustoms.mn 이메일: info@ecustoms.mn У т а с: (+976-11)-350049, (+976-11)-1281
6	몽골 상공회의소	주소: MNCCI Building, Mahatma Gandhi street, 1st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17011, UB Post - 101011001 전화: (+976-11)-327176 팩스: (+976-11)-324620 이메일 chamber@mongolchamber.mn, info@mongolchamber.mn 홈페이지: www.mongolchamber.mn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몽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 구성)

1. 외국인 투자 법률은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이들에 상응하여 제정한 기타 법률로 구성된다.
2. 몽골이 협약한 국제조약이 이 법과 상이한 경우 국제 조약을 우선으로 한다.

제3조(용어)

1. "외국인 투자"는 몽골 영토 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몽골의 기업과 합작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에 투자하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몽골에 영주하지 않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외국에 영주하는 몽골국민)을 뜻한다.
3. "몽골인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몽골 법인이나 개인(몽골국민, 몽골에 영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을 뜻한다.
4. "투자협정"은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하여 체결된 양해, 협동생산, 판매, 경영, 금융임대와 총판업 투자에 관한 협정이나 계약을 뜻한다.(2002.1.3 신설)
5. "원스톱서비스"는 외국인 투자기업 혹은 외국기업의 지점을 설립하기 위한 신청 서류들을 접수하고,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면허와 특별허가서를 발행하고, 정부 당국에 의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투자자들에게 자문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뜻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분야)

1. 법에서 금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생산, 서비스업종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2. 법에서 생산, 서비스업의 종사를 금한 장소 이외의 모든 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제5조(외국인 투자종류)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투자를 할 수 있다.

1. 태환 통화, 투자를 통해 투그릭화로 얻어진 소득
2. 동산, 부동산 및 재산권
3. 지적 재산권 및 산업 재산권

제6조(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는 다음의 유형으로 몽골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설립과 지점 설립을 할 수 있다.
2. 몽골의 투자자와 합작회사 설립을 할 수 있다.
3. 몽골법에 따라 몽골 사업체의 주식, 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4. 자원의 개발 및 가공을 위하여 이권과 공동생산의 권리를 얻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5. 판매와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금융임대와 총판업을 통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7조(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을 법률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투자의 법적 보장)

1. 외국인 투자는 몽골 영토 안에서 헌법, 이 법 그리고 이들과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률 및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2. 몽골내 외국인 투자를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을 금한다.
3. 외국인 투자 재산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등 없이 전액 보상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다.
4. 몽골이 조약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용된 재산의 보상금액수는 수용된 시기나 수용될 것에 대하여 공시된 시기의 가격으로 정한다. 보상은 지체 없이 이행된다.
5. 몽골의 비상사태나 전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몽골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 똑같이 취급된다.

제9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몽골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하는 데 있어서 몽골 투자자와 똑같은 환경을 누리도록 해준다.

제10조(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권(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정등록, 자본에 투자한 재산의 해외송금도 포함)
 - 2)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경영참여권.
 - 3) 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
 - 4) 아래의 소득과 이익을 외국에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권리.
 - 가. 배당될 지분의 소득과 주식 배당이익

- 나. 재산, 유가증권의 매각, 재산권의 타인에게로의 이전, 사업체에서의 탈퇴, 청산 등으로부터 배당될 소득
- 다. 채무의 원금과 이자.
- 라. 몰수재산에 대한 보상금.
- 마. 몽골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타 소득(다,라,마 항은 2002.1.3 추가됨)
- 5)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 가. 몽골법의 준수.
 - 나.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법인 지점에 의한 투자협정의 정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조항의 준수.
 - 다. 자연보호, 복구의 의무.
 - 라. 몽골 국민의 전통을 준수.

제11조(외국인 투자기업)

1. 몽골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등록자본금의 25%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으로 구성된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이다.(2002.1.3 20%에서 25%로 개정)
2. 외국인 투자기업은 등록된 날로부터 법인이 되며 몽골법에 따라 활동을 한다.

제12조(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승인 2002.1.3 조문삭제)

1. 외국인 투자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기관(이하 "투자청"이라고 한다)은 투자자의 신청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승인을 해준다.
2.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투자자의 이름, 주소, 국적.
 - 2) 투자 유형 및 액수.
 - 3) 기업의 유형.
 - 4) 주요 투자 분야, 생산, 서비스.
 - 5) 투자이행의 단계 및 기간.
3.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 1) 투자자의 신상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계약서.
 -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관.
 - 4) 투자에 관련된 마케팅, 경영, 기술 및 기타 협의 내용.
 - 5) 기술, 경제적인 계획.
 - 6) 투자자의 은행잔고 증명서.
 - 7) 천연자원의 탐사, 채굴, 가공, 토지의 이용 등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몽골의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서.
4. 투자청은 관련문서들이 첨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다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 1) 합법여부.
 - 2) 환경에 미칠 영향.
 - 3) 보건 위생 여부.
 - 4) 기술 수준 평가.
5. 이 조 4항 2호 및 3호에 명시된 평가는 국제 및 몽골의 표준에 따른다.
 6. 이 조 4항 4호에 명시된 평가는 몽골 정부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다.
 7.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승인하면 투자청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8.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몽골법, 자연환경, 보건위생 및 기술수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사업체 등록증 발급을 거부한다.
 9. 이 조에 명시한 투자자의 신청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양식은 투자청장이 정한다.
 10.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정 등록 자본, 계약서, 정관의 변경 시 이것을 30일 이전에 투자청에 통지 한다. 투자청은 이와 같은 변경문제를 이 조에 명시된 것에 따라 심사를 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제13조(유.무형 자산의 평가)

1.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의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태환 통화 및 투그릭화로 협의하여 평가한다. 투자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평가는 몽골 혹은 외국 자산평가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투그릭은 몽골은행이 정한 그 당시의 시세를 적용하여 태환통화로 계산한다.

제14조(외국인 투자 주무부서의 권한. 2002.1.3 전문개정)

1.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 행정기관은 외국인 투자 정책에 관련하여 다음 권한을 갖는다.
 - 1) 외국인 투자 정책결정과 그 집행감시
 - 2)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 집행의 감시
 - 3) 외국인 투자의 주요 분야와 방향에 관한 제언
2.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관은 다음 권한을 갖는다.
 - 1)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과 법안 집행.
 - 2) 투자 촉진 가능성의 모색과 정보제공.
 - 3) 원스톱 서비스 제공.
 - 4) 투자 통계에 관한 정보 준비.
 - 5) 외국인 투자기업 허가.
 - 6)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 종료.
 - 7) 기타 법률에 명시된 권한.
3. 국가 행정기관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투자기업, 지점과 투자협정의 등록)

1. 투자 관련 행정당국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을 근거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을 등록하고 이를 공시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의 계약서 및 정관에 대한 변경사항을 행정당국이 승인하면 국세청은 이것을 등록한다.
3. 행정당국은 투자협정의 공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된 신청서를 근거로 10일내에 허가서를 발급한다.(2002.1.3 신설)

제16조(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의 활동정지)

1. 몽골법의 명시사항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본 법 12조 4항에 명시된 평가 결과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위반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투자청은 이 기업의 활동을 임시 또는 완전히 정지시킨다.(2001.11.30 삭제)

제17조(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의 해산)

1. 활동을 정지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은 활동정지를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투자 주무부서와 국세청에 통지한다.
2. 투자협정이 종료되거나 무효화된 경우, 그리고 몽골법 위반 시 투자 협정은 등록과 허가가 취소된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산되면 주무부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무효화시키고 이것을 국세청에 통보한다.(2001.11.30 삭제)
4. 국세청은 이 조 3항에 명시한 통보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을 등록 말소시키고 이것을 공시한다.
5. 해산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의 최종정산이 끝난 후 외국인 투자자는 이 법 10조4항에 명시한 소득을 송금할 수 있다.(2002.1.3 전문개정)

제18조(조세)

1.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은 몽골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2.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 그리고 투자협정을 실행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몽골의 법인 소득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과 토지법에 따른다.(2002.1.3 신설)

제19조(안정협정 2002.1.3 전문개정)

1. 2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조세관련 주무장관은 몽골정부의 허가 하에 사업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안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안정협정은 몽골정부에 의하여 승인된다. 이 협정은 특정기간 내 안정된 조세환경을 보장하고, 투자의 목적과 규모를 명시하고, 실행기간을 명시하고, 협정 파기의 근거를 제시하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3. 초기 투자자 2백만 ~ 1천만 달러인 경우에 안정협정은 10년 기한으로 체결될 수 있고, 1천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15년 기한으로 체결될 수 있다.
4. 투자자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이 조기 종료된 경우에 조세감면부분은 투자자가 변상해야 한다.

제20조(안정협정의 체결 2002.1.3 전문개정)

1. 안정협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신청서와 안정협정 초안을 국가 중앙 행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정부 관련자는 14일 이내에 신청서와 초안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청자와 안정협정을 체결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3. 안정협정은 관련 부서들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사용)

1.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은 몽골토지법에 명시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 형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서에는 사용조건, 기간, 자연환경을 원상태로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조치, 토지세, 책임 등을 명시한다.
3.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토지 계약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체결한다.
 - 1) 100%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의 국유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서는 관련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몽골 측 토지 소유권자와 외국투자자가 체결한다.
 - 2) 몽골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유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서는 관련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몽골 측 토지소유권자와 해당기업의 경영진과 체결한다.
 - 3) 몽골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유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서는 정부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토지 소유권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진과 체결한다.
4. 이 조 3항의 2호 및 3호에 명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진이 체결한다. 계약서상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몽골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회사의 주식자본에 출자한 각각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5. 외국인 투자기업과 토지임대계약기간은 해당기업의 활동기간으로 정해진다. 최초의 토지 임대 계약기간은 60년 이하이다. 토지 임대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데, 초기 계약조건으로 1회 최고 4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6.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이 청산된 경우 토지임대계약도 동시에 해지된다.
7. 국가의 특수목적으로 토지를 대체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오직 정부에서만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보상액은 토지가 대체되거나 회수될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8. 토지를 공중보건, 자연환경, 국가안보이익에 해로운 용도로 이용할 경우 토지임대계약을 파기한다.

제22조(재무, 채무, 회계, 감사)

1.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은 재무, 채무, 회계, 외환 운용에 관한 활동을 몽골 법률에 따라 이행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은 몽골 법률에 따라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3.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의 재무, 무역활동을 몽골 법률에 따라 국립 재무 감사기관, 또는 감사권이 있는 제 3의 감사관이 감사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의 제 3의 감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제23조(보험)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은 몽골 법률에 따라 몽골 보험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노동 및 사회보장 관계)

1.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은 몽골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전문직,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직책에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노동력과 전문가의 수입문제는 몽골관련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2.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에 고용된 몽골국민과 관련된 노동, 사회보장 문제는 몽골의 노동 및 사회보험관련법에 의해 규제된다.
3.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점에 고용된 외국인은 몽골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 납부 후 남은 소득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5조(분쟁해결)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 투자자 사이,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 법인, 개인 사이에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업체 간의 계약이나, 몽골이 조인한 국제 조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몽골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26조(효력발생)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세계시장의 기회와 위협	2010.1
10-002	CIS 레저시장, 이것이 대세	2010.1
10-003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2010.2
10-004	2010년 세계시장의 뉴노멀 트렌드	2010.3
10-005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2010.3
10-006	독미 강소기업에게 배운다	2010.4
10-007	요르단, 중동의 의료허브 꿈꾸다	2010.4
10-008	요르단, 중동의 의약품 수출 교두보 된다	2010.4
10-009	불황을 이긴 세계시장의 우수 중기제품들	2010.4
10-010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2010.5
10-011	부상하는 아시아 유망 시장&산업	2010.5
10-012	미국 건강보험 개혁과 국내 업계 진출확대 방안	2010.6
10-013	글로벌 주요국 3D 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2010.6
10-014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2010.6
10-015	일본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2010.7
10-016	중국의 해외 M&A 사례와 시사점	2010.7

□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최근 대한수입규제전망과 2010 전망	2010.2
10-002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2010.3
10-003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2010.3
10-004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체결과 그 영향	2010.4
10-005	러시아 Skinhead 테러주의	2010.4
10-006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성공사례	2010.5
10-007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2010.5

□ KOTRA Executive Brief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중동의 미개척 시장 시리아	2010.1
10-002	오바마 취임 1년, 평가와 전망	2010.1
10-003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010.2
10-004	도요타 리콜 사태의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파급효과 분석	2010.3
10-005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변화 동향 및 전망	2010.3
10-006	2010년 1분기 KOTRA-SERI 수출종합지수	2010.3
10-007	2010 美 USTR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0.4
10-008	2010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4
10-009	떠오르는 녹색강국 중국시장 집중조명	2010.4
10-010	일본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2010.4
10-011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유전개발 프로젝트 동향	2010.5
10-012	유럽발 경제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10.5
10-013	내전종식 후 1년, 스리랑카의 새로운 기회를 점검하다	2010.5
10-014	2010 콜롬비아 대선동향	2010.5
10-015	칠레 OECD 가입과 국내업체 시사점	2010.5
10-016	태국 시위사태 현황과 전망, 경제 파급 영향	2010.5
10-017	녹색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시장의 강소기업들	2010.6
10-018	일본 신성장전략 보고서	2010.7
10-019	2010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7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KOTRA가 바라본 중국 성시별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전략	2010.2
10-002	세수로 보는 2010 중국경제	2010.4
10-003	KOTRA가 선정한 올해의 차이나 키워드	2010.4
10-004	상하이 엑스포 참가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4
10-005	상하이엑스포 이후 중국, 이렇게 바뀐다	2010.4
10-006	아시아, 대양주 녹색시장 현황 및 협력방안	2010.5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7	중국 내수 신홍유망시장 공략 설명회	2010.7
10-008	올해 중국 히트상품은 이것	2010.7
10-009	주목해야 할 중국의 2,3선 도시들	2010.7

□ FDI Them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PIIGS 국가 경제위기 동향 및 외국인직접투자 영향 분석	2010.2
10-002	글로벌 기업의 CVC 운영현황 및 투자동향	2010.3
10-003	글로벌기업의 일본내 사업 철수, 축소 동향 및 투자유치 시사점	2010.3
10-004	중국 위안화절상이 국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3
10-005	'10년 1분기 미국·일본·유럽 대한투자현황 및 향후전망	2010.6
10-006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010.6
10-007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0.7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지역별 진출여건	2010.1
10-002	2010年 1000大 수출유망상품	2010.1
10-003	캄보디아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북	2010.1
10-004	KOTRA 중장기 경영전략 G-LEAD 2020	2010.1
10-005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미국편)	2010.2
10-00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중국편)	2010.2
10-007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일본편)	2010.2
10-0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베트남편)	2010.2
10-009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0.3
10-010	Living in Korea Q&A	2010.2
10-011	해외 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0.2
10-012	중동 · 북아프리카 비즈니스 & 문화 가이드	2010.2
10-013	[ITS]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14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5	[태양광]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6	2009 중국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7	2009 일본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8	중국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	2010.3
10-019	한-아부다비 비즈니스 포럼 종합 결과 보고서	2010.3
10-020	IPP(민자발전)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케냐)	2010.5
10-021	주요국 Smart Grid 정책/시장 조사	2010.4
10-022	'09년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0.4
10-023	그린리포트 (Vol 7, 2010 Spring)	2010.4
10-024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Network 2010	2010.4
10-025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유럽편	2010.4
10-026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미주편	2010.4
10-027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아시아/대양주편	2010.4
10-028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10.4
10-029	북미 온라인 대형 유통망 진출 전략	2010.4
10-030	2009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0.5
10-03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9	2010.5
10-032	러시아 건설시장 진출가이드	2010.5
10-033	중동 소매유통시장 공략포인트	2010.6
10-034	주요산업별 국가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2010.6
10-035	주요산업별 FDI 프로젝트 동향	2010.6
10-036	우리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지도	2010.6
10-037	SW수출강국도약-이스라엘성공사례분석	2010.6
10-038	2009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0.6
10-039	중동CIS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0.6
10-040	중동CIS 의약품 시장동향	2010.6
10-041	Global Smart SOC Initiative 2010 결과 보고서	2010.7
10-042	그린리포트(Vol 8, 2010 Summer)	2010.6
10-043	인도 주별 시장특성과 비즈니스 기회	2010.6
10-044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상)	2010.7
10-045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하)	2010.7
10-046	몽골 투자 가이드	2010.7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0-001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0.1
10-002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10.1
10-003	“물류센터를 활용한” 북미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전략설명회	2010.3
10-004	세계 전력 시장 진출 설명회	2010.3
10-005	앞으로 5년, 미리보는 중국시장과 사업기회	2010.3
10-006	[ITS]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7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8	인도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성공전략	2010.3
10-009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3
10-010	GATEI 글로벌 바이오기술 투자세미나	2010.3
10-011	KOTRA 중남미클럽 창립 포럼	2010.3
10-012	2010 글로벌 채용박람회	2010.3
10-013	KOTRA-Alibaba 온라인 한국 상품관 설명회	2010.4
10-014	제 2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5
10-015	2010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0.5
10-016	GE 투자설명회	2010.5
10-017	Global Project Plaza 2010	2010.5
10-018	Global Project Plaza 2010 – Asia Session	2010.5
10-019	Solvay Venture Initiative	2010.6
10-020	인도 비즈니스 포럼 창립 세미나	2010.6
10-021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2010.6
10-022	중동CIS 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2010.6
10-023	중남미 클럽 2차 포럼	2010.6